第136回國會 憲法改正特別委員會會議錄 第8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87年9月17日(木)
場 所 憲法改正特別委員會

議事日程

1. 憲法改正案起草에관한件
2. 憲法改正에관한請願(沈完求議員紹介)
3. 憲法改正에관한請願(任斗彬議員紹介)
4. 憲法改正에관한請願(金在光議員紹介)
5. 憲法前文改正에관한請願(李龍澤·辛達洙·鄭始鳳議員紹介)

審査된案件

1. 憲法改正案起草에관한件 ····· 1面
2. 憲法改正에관한請願(沈完求議員紹介) ····· 55面
3. 憲法改正에관한請願(任斗彬議員紹介) ····· 55面
4. 憲法改正에관한請願(金在光議員紹介) ····· 55面
5. 憲法前文改正에관한請願(李龍澤·辛達洙·鄭始鳳議員紹介) ····· 55面

(15時25分 開議)

○委員長 蔡汝植 많은 委員들께서 歸鄕活動등 분주하신 가운데에 이렇게 갑자기 本 委員會가 召集이 되었읍니다.

특히 外國에서 公式日程이 바쁜 가운데에도 그 日程을 그만 두고 金守漢委員같은 분은 지금 飛行機로 막 歸國을 해 주셨읍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成員이 되었읍니다.

第8次 憲法改正特別委員會를 開議합니다.

먼저 報告를 듣겠읍니다.

○立法調査官 朴柱一 報告를 드리겠읍니다.

(報告事項은 끝에 실음)

1. 憲法改正案起草에관한件

(15時27分)

○委員長 蔡汝植 議事日程 第1項 憲法改正案起草에관한件을 上程합니다.

이제 憲法改正案起草小委員會 委員長으로부터 同 小委員會에서 그동안 起草한 내용에 대해서 報告를 듣도록 하겠읍니다.

同 小委員會 委員長이신 玄敬大委員께서 報告해 주시겠읍니다.

○小委員長 玄敬大 憲法改正案起草小委員會 委員長 玄敬大委員입니다.

當 小委員會는 1987年8月31日 第7次 憲法改正特別委員會의 議決에 따라서 憲法改正案을 起草하라는 莫重한 任務를 띠고 本人을 包含하여 民主正義黨의 許淸一委員 柳尙昊委員 金鍾仁委員 李致浩委員 統一民主黨의 許京萬委員 金琫鎬委員 朴寬用委員 新韓民主黨의 申敬說委員 한국국민당의 申喆均委員 이상 10人으로 構成되어서 9月1日부터 17日까지 8차례의 會議를 가졌읍니다.

當 起草小委員會에서는 憲法改正特別委員會에 提出된 各 政黨의 憲法改正案試案과 그동안 與野 各 政黨間에 이루어진 合意改憲要綱을 基礎로 하여 憲法前文과 本文 10章 130條 및 附則 6條로 된 憲法改正案을 起草하였읍니다.

여러 委員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29宣言 이후 民主正義黨과 統一民主黨과는 8人政治會談을 民主正義黨과 新韓民主黨 및 한국국민당과는 4人政治會談이 각각 개최된 바 있읍니다.

8人政治會談은 7月31日부터 國會 524號室에서 民主正義黨에서는 權翊鉉議員 尹吉重議員 崔永喆議員 李漢東議員이 代表로 統一民主黨에서는 李重載議員 李龍熙議員 金東英議員 朴容萬議員이 代表로 兩 政黨의 改憲案試案中 110個의 爭點

事項을 가지고 會談을 시작하여 세차례에 걸친 合意끝에 8月31日 附則을 除外한 全項目에 걸쳐서 완전 合意에 이르게 되었고

또한 民主正義黨과 新韓民主黨間의 4人政治會談은 8月4日부터 國會 523號室에서 民主正義黨에서는 尹吉重議員 崔永喆議員이 代表로 新韓民主黨에서는 林鍾基議員과 金玉仙議員이 代表로 100餘個項의 爭點事項을 가지고 協議를 시작하여 2次에 걸친 合意끝에 9月8日 前文 保安處分要件 大統領任期問題 國務委員 解任議決權問題의 4가지 事項을 除外하고는 合意에 이르게 되었으며

民主正義黨과 한국국민당과의 4人會談은 8月4日 國會 第522號室에서 民主正義黨의 權翊鉉議員과 李漢東議員이 代表로 한국국민당에서는 金光洙議員과 金孝榮議員이 代表로 約90個 項目에 관한 協議가 개시되어 2次에 걸친 合議끝에 3가지 項目인 大統領 任期 選擧年齡 地方自治團體長의 直選問題에 관해 合意를 이룩하지 못했으나 9月4日 兩黨의 總裁會談에서 3個 未合意事項에 대한 原則的인 合意를 이루고 具體的인 審議에 대해서는 國會의 憲特에 委任한 바 있읍니다.

또한 9月8日부터 16日까지 民主正義黨과 統一民主黨間에 8人政治會談을 再開하여 이 憲法의 施行日과 國會議員 總選時期 등에 관한 附則條項에 대한 合意가 이루어졌읍니다.

이와 같이 與野政黨代表間에 이루어진 合意事項을 中心으로 하여 當 起草小委員會에서는 改正案을 기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當 起草小委員會에서는 改正案을 起草함에 있어서 지난 40餘年間의 우리 憲政史에서 8차례나 改憲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改憲後遺症으로 困難을 겪었던 점을 勘案하여 아무리 理想的인 憲法도 그것이 國民의 意思와 동떨어져 規範力을 發揮하지 못하면 無意味한 것이기 때문에 國民의 意思가 充分히 反映되어서 모든 國民이 憲法을 지키고 존중하는 强力한 「憲法에의 意志」를 가질 수 있는 憲法改正案을 起草하려고 努力하였읍니다.

또한 小委員들은 憲法의 한 條文 한 條文이 죽어 있는 文字가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歷史와 淵源을 갖고 있는 人類의 民權鬪爭史 내지는 自由民主主義 理念의 發展史가 깃들여져 있는 歷史的 事實이라고 하는 점을 깊이 認識하고 各條文의 字句 하나 用語 하나하나에 한점의 소홀함이 없이 세밀한 心血을 기울여서 起草하였읍니다.

그러면 當 小委員會에서 起草한 憲法改正案의 主要骨子를 分野別 및 條文順序別로 간략하게 報告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前文 및 總綱에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4·19 民主理念의 繼承을 明示하고 國家의 在外國民 保護義務와 統一政策의 樹立·推進 努力 그리고 軍의 政治的 中立性을 規定하였읍니다.

그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먼저 前文에서 民族自主精神과 民主主義理念의 結晶體이자 우리나라 近代的 政府建立의 精神的 礎石이라고 할 수 있는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의 繼承을 明示함으로써 日帝支配로 인한 民族史의 斷切을 連結시켜 國家의 正統性을 회복하도록 하였고 또한 民主憲政을 守護하기 위한 國民的 抵抗權問題에 관해서는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繼承토록 함으로써 그 精神을 反映하였으며 다음 總綱에서는 우리나라의 國際的 地位의 浮上과 함께 增加一路에 있는 海外僑民을 積極的으로 保護育成하기 위하여 第2條第2項에 國家의 在外國民保護義務規定을 新設하였고 分斷된 祖國의 現實을 勘案 民族統一이 至上課題임을 認識하여 大韓民國은 統一을 指向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立脚한 平和的 統一政策을 樹立 推進하도록 第4條를 新設規定하였으며 또한 文民政治의 實現과 軍의 政治介入 禁止問題에 관해서는 第5條第2項後段에 國軍의 "政治的 中立性은 遵守된다"라고 規定해서 그 趣旨를 反映하였고 또한 政黨條項에 관해서는 政黨의 組織 活動과 함께 그 設立目的도 民主的이어야 한다는 뜻을 明示하였으며 한편 그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경우에는 그 解散을 憲法裁判所에서 提訴하여 審判 받도록 改正案 第8條에 反映하였읍니다.

둘째로, 國民의 權利意識이 고양되고 國民經濟生活이 크게 向上된 現實에 맞추어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最大限으로 伸張토록 國民의 基本權條項을 改正 起草하였읍니다.

그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먼저 身體의 自由에 있어서는 國家權力의 濫用으로 인한 基本權侵害를 防止하고 實質的인 基本權實現을 위하여 第12條第1項에서 處罰과

保安處分 및 强制勞役의 要件으로 法律과 適法한 節次를 追加하였고 同條第2項의 令狀制度에 있어서도 適法한 節次에 따라 令狀이 發付되도록 하였으며 同條第5項에서는 刑事被疑者를 逮捕 拘束할 때에는 그 理由와 辯護人의 도움을 받을 權利가 있음을 告知받지 아니하고는 逮捕 拘束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함과 아울러서 逮捕 拘束된 者의 家族 등에도 그 內容을 通知하도록 規定하여 刑事被告人 등이 有利한 證據提示 其他 防禦權을 適切히 行使할 수 있는 機會를 주도록 하였고 同條第6項에서는 한사람의 國民이라도 억울하게 拘束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拘束適否審査請求權을 모든 拘束者에 대하여 認定하고 對象犯罪에도 아무런 制限을 두지 아니하도록 憲法上 保障하였읍니다.

다음 國民의 政治的 意思表示의 權利인 言論出版 및 集會 結社의 自由를 最大限으로 伸張하고 國家權力에 의한 侵害事例가 없도록 이를 미연에 防止하기 위하여 言論 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閱 및 集會 結社에 대한 許可는 認定되지 않는다는 것을 案 第21條第2項에 明文化하였으며 다만 表現의 自由의 重要性과 通信 放送 新聞 등 言論媒體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일정한 施設基準을 정하는 것은 不可避하다는 前提아래 通信 放送의 施設基準과 新聞의 機能保障을 위해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써 정할 수 있도록 同條第3項에 規定하였고

財産權의 保障에 있어서는 오늘날 大規模 公益事業 등으로 인하여 國民의 財産權侵害事例가 많아지고 있는데 반하여 現行 憲法에서는 公益을 强調함으로써 國民의 財産權保障이 未洽한 점을 勘案해서 案 第23條에서 國民의 財産權의 收用 使用 및 制限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하도록 起草하였읍니다.

國民의 選擧權問題에 있어서는 案 第24條에서 選擧年齡의 引下와 관련하여 與野가 合意한 精神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選擧年齡은 法律에서 정하도록 委任하였고

請求權的 基本權에 있어서는 刑事被害者는 當該事件의 裁判節次에 陳述할 수 있는 權利를 案 第27條第5項에 新設하였으며 刑事補償請求에 있어서도 無罪判決을 받은 때를 包含하여 無嫌疑 不起訴處分등 法律이 정하는 不起訴處分을 받은 때에도 補償請求가 可能하도록 案 第28條에 包含하여 起草하였고 他人의 犯罪로 生命 身體에 被害를 받은 者는 國家로부터 救助를 받을 수 있도록 案 第30條를 新設하였읍니다.

社會的 基本權에 있어서는 敎育을 받을 權利의 내용으로서 案 第31條第4項에 大學의 自律性을 追加하고 지금까지의 우리의 經濟成長은 勤勞者의 노력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認識하고 勤勞者의 生存權과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保障하기 위하여 勤勞福祉의 最大 課題라고 할 수 있는 最低賃金制의 實施를 案 第32條第1項에 歷代憲法上 처음으로 新設 明文化 하였읍니다.

특히 女性勤勞者가 雇傭 賃金 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不當한 差別을 받지 않도록 第4項에 별도 規定으로 新設하여 雇傭 등의 分野에 있어서 實質的인 男女平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案 第33條第1項에서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에 대한 法律留保條項을 削除함으로써 勤勞者의 勞動三權이 確實하게 保障되도록 하였고 現行 憲法上 國家 地方自治團體 國公營企業體 防衛産業體등 國民經濟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事業體에 從事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에 의하여 制限 또는 認定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勞動三權保障의 근본취지라고 할 수 있는 勤勞者의 團體交涉力 向上에 있어서 團體行動權의 保障이 핵심적 요소라는 점을 勘案하여 團體行動權制限對象을 縮小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前提아래 案 第33條第3項에서 法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産業體에서 從事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만을 制限할 수 있도록 起草하였으며 國民의 인간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保障하기 위하여 그 內容과 對象을 擴大하였는바 女子와 老人 靑少年에 대한 國家의 福祉政策實施 身體障碍者 生活無能力者에 대한 國家의 保護規定을 案 第34條에 新設 내지 補完하고 이와 함께 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危險으로부터 國民을 保護할 義務規定을 同條에 新設하였고 環境權에 관한 案 第35條의 規定과 婚姻 家族 保健에 관한 權利規定인 案 第36條를 補完하여 國家의 住宅開發努力義務와 母性保護規定을 새로이 追加하였읍니다.

세째로 國會의 機能活性化와 地位向上을 위하여 國會의 權限을 强化하였읍니다.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먼저 國會運營의 活性化와 少數派保護를 위하

여 案 第47條에서 國會臨時會 召集要求 定足數를 在籍議員 4分의1 이상으로 완화하고 定期會에 있어서 豫算案 決算등 國政審議의 充實化를 기할 수 있도록 定期會의 會期를 現行 90日에서 100日로 연장하였으며 아울러 같은 趣旨에서 國會의 年間 開會日數를 現行 年150日로 制限하던 것을 削除하여 開會日數에 制限없이 國會가 開會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다음 國會機能의 活性化를 期하고 行政府에 대한 보다 效率的인 감시 비판기능을 遂行토록 하기 위하여 國政監査權을 復活함과 동시에 現行의 國政調査權을 함께 規定함으로써 國政監査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하고 國政調査는 특정한 國政事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調査할 수 있도록 그 槪念을 區分하여 案 第61條에 規定하였고 현행 憲法의 議院內閣制的 요소를 排除하고 行政府와의 權力均衡을 이루도록 現行의 國務總理·國務委員解任議決權을 解任權으로 變更하여 案 第63條에 規定하였읍니다.

네째로 行政府에 관한 事項으로서는 大統領直選制를 採擇하고 長期執權防止裝置를 마련하였으며 大統領의 權限을 縮小 調整하였읍니다.

그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政府形態는 大統領中心制의 現行制度를 유지하면서 大統領直選의 國民的 合意를 받아들여서 案 第67條에서 大統領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해 選出하도록 大統領直選制를 採擇하였고

大統領被選擧權者의 要件에 5年이상 계속 國內居住要件을 削除하고 案 第68條에서 大統領任期滿了時 後任者選擧는 任期滿了 70日 내지 40日前에 闕位된 때에는 60日 이내에 選擧를 하도록 하였으며

우리 憲政史의 悲劇은 大統領의 長期執權에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를 방지하고 平和的 政府移讓을 保障함은 물론 인기영합적 政策을 豫防하고 소신있는 國政遂行을 보장토록 하기 위하여 大統領의 任期를 5年 單任으로 案 第70條에 規定하였읍니다.

또한 大統領의 權限을 縮小하여 權威主義的 體制로의 變質을 防止하는데 力點을 두었는 바 現行憲法上 大統領에게 부여되어 있는 非常措置權은 發動要件을 아무리 엄격하게 制限하여도 政治的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削除키로 하고 그 대신에 案 第76條第1項에서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財政 經濟上의 危機에 있어서 緊急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緊急財政經濟處分과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發할 수 있도록 하고 同條 第2項에서 國家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交戰狀態에 있어서 國會의 集會가 不可能할 때 한하여 法律의 效力을 갖는 緊急命令을 發할 수 있도록 하는 緊急財政經濟處分 命令權制度와 緊急命令制度를 新設 規定하였으며 이러한 緊急財政經濟處分 命令과 緊急命令은 國會에 報告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國會의 承認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그 命令은 失效되도록 하였읍니다.

또한 大統領의 權限縮小를 위하여 의원내각제적 요소인 大統領의 國會解散權을 改正案에서 削除하였으며 大統領의 諮問機關으로는 國會元老諮問會議·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國民經濟諮問會議를 案 第90條 내지 92條에서 그 名稱을 變更하거나 新設하였읍니다.

다섯째 司法權의 獨立을 保障하기 위하여 司法府에 관한 規定을 補完하였읍니다.

그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먼저 大法官 任命節次를 개선하여 大法官의 任命에 民意를 反映함으로써 그 身分을 强化토록 大法院長의 提請으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도록 案 第104條第2項에 규정하였으며

司法府의 自律性과 獨立性 및 人事의 公正性을 기하기 위하여 案 第104條第3項에서는 一般法官의 任命에 大法官會議의 同意를 얻어 大法院長이 任命하도록 規定하였고 그밖에 大法院長의 任期는 현행 5年을 6年으로 연장하되 重任을 禁止하고 大法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裁判의 獨立性과 法官의 身分保障을 위하여 案 第106條第1項에서 法官은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해서만 罷免되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軍事裁判을 管轄하는 特別法院으로서의 軍法會議는 이를 軍事法院으로 그 名稱을 바꿈과 아울러서 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의 單審制는 人權尊重의 側面에서 死刑을 宣告한 경우는 除外하도록 案 第110條에 規定하였읍니다.

여섯째 憲法委員會를 廢止하고 案第111條 내지 第113條에 憲法裁判所를 獨立機關으로 新設하여 憲法解釋의 一貫性과 統一性을 유지하는 한편 司法府의 政治化를 豫防토록 하였읍니다.

新設하려고 하는 憲法裁判所의 所管事項으로

서는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審判 彈劾審判 政黨解散審判 國家機關 相互間 등의 權限爭議에 관한 審判 그리고 國家權力에 의하여 個人의 基本權이 침해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한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任期6年의 裁判官은 法官의 資格을 가진者 중에서 9人을 大統領이 任命하되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고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토록 하였고 憲法裁判所에서 違憲決定 彈劾의 決定 政黨解散의 決定 憲法訴願에 관한 認容決定을 함에는 그 審判要件을 엄격히 하였으며 憲法裁判所에 內部規則制定權을 부여하였읍니다.

일곱째 選擧管理에 있어서는 案 第114條에서 中央選擧管理委員의 任期를 現行 5年에서 6年으로 延長하였고 委員의 罷免要件을 禁錮以上의 刑의 宣告로 하여 그 身分을 保障하였으며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制定權을 부여하도록 規定하였읍니다.

여덟째 憲法上 經濟條項에 있어서는 自由市場經濟原理를 根幹으로 하면서 그동안 産業社會에서 야기되는 階層間·産業間·地域間의 不均衡을 是正하기 위하여 必要한 規制와 調整 그리고 國家의 努力을 强調하는 內容으로 補完規定하였읍니다.

먼저 經濟秩序에 관한 原則規定인 案 第119條 第2項에서는 國家는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成長과 適正한 所得分配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市場支配와 經濟力의 濫用을 防止토록 하며 經濟主體間의 調和를 통한 經濟의 民主化를 위하여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도록 現行 規定을 補完하였고 案 第121條의 農地制度에 관하여서는 耕者有田의 原則 達成과 小作制度의 禁止를 宣言하고 아울러 例外的으로 認定되는 農地의 賃貸借나 委託經營의 認定要件에 不可避한 事情을 追加規定하였으며 國土의 利用·開發을 위한 義務賦課規定인 案 第122條에서는 國土가 모두의 生産 및 生活의 基本임을 明示하였고 案 第123條에서는 農·漁業保護育成을 위하여 國家는 農·漁村綜合開發과 그 支援計劃을 樹立施行토록 하고 地域間 均衡經濟의 達成과 農水産物의 價格安定을 위하여 需給均衡과 流通構造改善에 國家가 努力하도록 憲法에 明示하였으며 案 第127條에서는 科學技術의 革新과 情報 및 人力開發을 위한 國家的 努力을 明文化 하였읍니다.

끝으로 改正憲法의 附則條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憲法의 施行日을 與野가 合意한 대로 現行憲法에 의한 大統領의 任期가 終了하는 날의 다음날인 1988年 2月 25日로 함과 아울러서 이 憲法施行에 필요한 法律의 制定·改正과 이 憲法施行에 관한 준비는 이 憲法施行前에 할 수 있도록 案 附則 第1條에 規定하고 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選擧는 이 憲法 施行日 40日 前까지 실시하며 최초의 大統領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開始하도록 案 附則 第2條에 規定하였으며 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國會議員 選擧는 이 憲法公布日로부터 6月以內에 실시하며 최초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總選擧後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로부터 開始하고 이 憲法公布 당시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 前日에 終了하는 것으로 案 附則 第3條에 規定하였고 이 憲法에 의하여 選任方法이나 任命權者가 변경된 公務員과 大法院長 및 監査院長은 이 憲法에 의하여 後任者가 選任될 때 까지 그 職務를 행하며 그 任期는 後任者가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하고 이 憲法施行 당시의 公務員 政府가 任命한 企業體의 任員 그리고 이 憲法施行 당시의 大法院長과 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을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보도록 함과 아울러서 이 憲法中 公務員의 任期 또는 重任制限에 관한 規定을 이 憲法에 의하여 그 公務員이 최초로 選任된 때로부터 적용하도록 案 附則 第4條에 規定하였고 이 憲法 施行 당시의 法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限 그 效力을 지속하며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職務를 행하고 있는 機關은 새로운 機關이 설치될 때까지 存續하여 그 職務를 행하도록 案 附則 第5條 및 6條에 規定하였읍니다.

지금까지 現行憲法의 前文 및 本文中 起草된 主要 改正案의 要旨를 報告드렸읍니다마는 이 報告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現行憲法의 諸規定은 現行憲法內容대로 改正案에 포함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일부 경미한 부분의 改正 및 字句의 改正은 여러 委員님들께 配付해 드린 憲法改正案과 憲法改正案對比表를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當 起草小委員會에서는 合意成案된 草案에 대해서 學界의 金道昶敎授와 朴鈗炘 法制處次長의 字句·體系에 관한 意見을 反映하여 當 小委員會案을 起草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

다.

또한 議事日程 第2項 내지 6項에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 請願審査에 대한 報告도 아울러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沈完求議員의 紹介로 제출된 憲法改正에관한 請願 任斗彬議員의 紹介로 제출된 憲法改正에 관한請願 金在光議員의 紹介로 제출된 憲法改正에관한請願 그리고 李龍澤議員의 紹介로 제출된 憲法前文改正에관한請願은 각각 그 大部分의 內容이 政黨의 改憲案試案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主要爭點事項으로서 與野 改憲案 協商過程에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當 起草小委員會에서는 本會議에 附議하지 않기로 審査 決定하였읍니다.

아무쪼록 當 起草小委員會에서 起草報告한 憲法改正案을 憲法改正特別委員會案으로 採擇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憲法改正案起草小委員會의 改憲案起草報告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蔡汶植 玄敬大委員 수고가 많으셨읍니다.

그리고 또 憲法改正起草小委員會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방금 憲法改正案起草小委員長으로부터 자세한 報告를 들었읍니다.

이 憲法改正案起草小委員會에서 起草한 憲法改正案을 그대로 접수해서 우리 委員會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可決…

(「議事進行發言 주세요」하는 이 있음)

조금 계세요.

議事進行發言申請이 방금 네분께서 申請이 있었읍니다.

申敬說委員 韓錫奉委員 林鍾基委員 金玉仙委員 네분 發言申請이 있었읍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것 이대로 진행을 시키고 이것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 議事日程 上程된 案件을 審議中입니다.

(「報告에 대한 議事進行이에요」하는 이 있음)

議事進行發言 다 드리겠읍니다.

이것 마무리 해놓고 하지요.

(「報告에 대한 議事進行發言이라니까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벌써 上程이 되어가지고 지금 審議 進行中인 案件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용하세요.

그러면 잠시 이 會議를 우리가 원만히 하기 위해서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54分 會議中止)

(16時 2分 繼續開議)

○委員長 蔡汶植 이제 다시 會議를 계속하겠읍니다.

우리 아주 어렵고 또 큰 일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주 원만히 會議를 進行시키기 위해서 議事進行發言 한 분 먼저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나서 또 玄敬大 小委員會委員長께서 補充해서 報告 添加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申敬說委員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敬說委員 新韓民主黨의 申敬說委員입니다.

오늘 제가 議事進行發言을 申請을 하게 된 經緯는 憲法改正起草小委員職의 小委員 자리에서 그 동안 여덟차례에 걸쳐서 文案整理 나아가서는 逐條審議하는 데에 제가 直接 參與를 했읍니다. 그런데 그 過程에서 제가 느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憲政史 우리나라 40餘年만에 合意改憲이라는 그런 막중한 國民的 合意改憲이라는 그런 改憲案을 다루는데 이렇게 荒唐無稽한 改憲이 있나 한 마디로 개탄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이 憲法은 國民을 위한 國民의 憲法이 아니에요! 兩大 特定政黨의 黨利黨略과 兩大政黨의 系派利益과 政權에 어두운 兩大政黨의 횡포에 의해서 默契를 하고 計略을 해서 짜내온 이러한 改憲이요 이 改憲은 한 마디로 國民을 우롱을 하는 그러한 改憲이 아닐 수 없다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잠깐 議事進行發言을 신청을 하고 나왔읍니다.

憲法前文에 볼 것같으면 새로 挿入된 것이 大韓民國의 法統을 이어서 3·1精神 不義에 항거한 4·19理念을 계승하고 이것이 다시 挿入이 되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檀紀 4320年이에요. 우리나라의 弘益人間의 開國理念 開國精神이 빠져있어요. 이 憲法前文이라는 것이 나라의 建國理念이 빠져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을 前文이라

고 내놓을 수 있읍니까? 3·1運動이 바로 臨時政府를 수립했어요. 그 후에 8·15光復을 맞이했어요.

그 당시 美·蘇共同委員會에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백성들은 自治能力이 없기 때문에 信託統治를 해서 信託統治로 統治를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때 그것을 以北에 있는 金日成이도 이틀간은 反對 反託運動에 나섰어요. 그러다가 이틀만에 돌변을 해가지고 蘇聯에 가서 指令을 받고 와서 贊託統治로 나갔어요. 그것이 38以北의 金日成政權이야!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죽어간 先輩도 많이 있어요. 오늘에 生存하고 있는 이 旣成 現役政治人들도 지금 綺羅星같이 있어요.

그때 反託運動이라는 그러한 民族 自主的인 民族精神을 가지고서 大韓民國을 建立을 했던 것이에요. 그 당시 그 美·蘇共同委員會에서 끝까지 이것을 주장을 했어요. 信託統治를 해야겠다. 그래 우리가 自治能力이 있기 때문에 大韓民國 建立을 해야 된다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다 해서 그 당시 大韓民國의 建立이라는 그러한 建立精神 그 反託運動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大韓民國이 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것도 建國精神의 하나여! 이 精神 하나를 넣어야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바로 6·25事變이 있어요. 그 6·25事變을 통해가지고 大邱까지 金日成이가 쳐들어 왔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護國을 위해서 이 自由守護를 위해서 수많은 150萬이라는 이러한 엄청난 우리 젊은이들이 다 죽어갔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6·25動亂에서 발현된 自由守護精神이라는 것도 마땅히 여기에 담겨져야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 후에 4·19! 4·19精神 좋습니다. 이것 이래가지고 不義에 항거한 4·19理念을 계승하고 우리나라 民族精氣는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民族精氣를 再確立을 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前提下에서도 반드시 이 建國理念精神 이런 것이 自由守護精神이 반드시 여기에 담겨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新民黨에서는 주장을 해왔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묵살되고 말았다 이것이에요. 아무리 數的으로 우세하다고 해서 강력한 民正黨 統民黨이라고 해서 이렇게 깔아뭉개고 나갈 수 있는 것이야!

自由守護를 지키다가 죽어간 저 先輩 先烈들 한테 얼마나 罪된 일이고 辱된 일이야! 나는 이것을 超黨的 입장에서 政黨을 초월해서 우리 民族 우리 後世 100年大計 우리나라의 傳統的인 民族精氣 이 建國理念만은 꼭 심어줘야 되겠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起草委員會에서 이것이 관철이 안되었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을 憲法前文이라고 내놓을 수 있읍니까?

또 하나는 12條 保安處分問題입니다. 保安處分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야! 멀쩡한 놈을 갖다가… 共產黨 잡는 처분이야! 이러한 毒素條項이 있는 이러한 構造惡的인 이러한 것을 지금 憲法에 담았어요. 이것이 國民을 위한 憲法이에요 改憲이에요? 이것이…… 改惡이지.

63條 國務委員解任建議案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新民黨에서 反對를 했던 것이에요. 끝까지 무시당하고 말았어요.

70條에 大統領任期도 또 끝까지 묵살당하고 말았다 이런 얘기에요. 도대체가 大統領中心制를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大統領의 任期를 갖다가 5年單任으로 해요? 全世界 어느 나라를 봐도 그런 條項이 없어요. 任期單任이… 4年으로서 1次에 한해서 重任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다되어 있어요. 아주 後進「아프리카」 저 後進國家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소위 先進이요 中進에서 先進의 문턱에 선다고 하는 이러한 民主化 政治識見이 그 어느때보다도 향상이 되어 있는 이러한 우리 國民들이 이것 용납합니까? 용납할 수 없읍니다.

또 하나 統一民主黨에서는 勤勞者의 企業參與權을 하나 들고 나왔어요.

또 하나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勤勞者의 利益均霑權을 달라 둘을 들고 나왔어요.

또 하나는 光州 5·18事態를 憲法 前文에 넣자 이것 8人政治會談이라는 것이 무엇이 말라 비틀어진 것이에요? 다같은 우리 議員이에요. 그것은 民正黨의 8人代表이고 統民黨의 代表야! 짝자꿍 해가지고 다 말아먹고 싹 그냥 묵살시켜 버렸다 말이에요. 光州의 市民이나 光州의 遺族代表들이 5·18을 憲法 前文에 넣어달라는 주문 하나 없어요. 왜 이것을 내놓고서 하나도 거기에다가 올려놓지도 못하고 지금 와서 그것을 팔아먹느냐 이 말이야! 왜 遺族들을 두번 세번 울리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企業參與權… 오늘날 노사분규가 限界線을 넘어서고 있어요. 원인이 어디있느냐? 바로 利益均霑權 이것은 制憲憲法 18條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말살을 한다니 이것 도대체가 政權에 환장을 한 사람들이야! 눈이 뒤집혔어 눈이…

나는 그래서 新民黨에서는 勤勞者의 利益均霑權을 끝까지 주장을 하고 지금 이 순간도 주장이 合意가 안되고 있읍니다. 이 점을 분명히 여러 委員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 8人政治會談으로 말미암아서 일전에 臨時國會를 召集을 해 놓았어요. 우리 여기에 委員長님 계시지만 "이것 우리 10日까지 꼭 發議를 해야겠다 그러니 11日 이것을 열어야겠다" 그래 제가 그랬읍니다. "아니 지금 이판국에 우리黨하고는 하나 合意도 안되고 있는 이것이 지금 네가지 다섯가지 項이 안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合意改憲이라고 내놓을 수 있읍니까? 이게 소위 民主政治하는 것입니까? 이러니 연기합시다. 定期國會때나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召集을 해 놓았어요. 그래놓고서 느닷없이 와가지고 아니 8人會談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텔레비젼」앞에 나와가지고 무슨 政治協商을 하는 것인지 이상한 「사인」이나 하고 전부 國民들한테 滿場一致 合意를 했다 이거야. 歷史的인 憲法을 大妥協을 해서 合意를 했다 해놓고 附則이 안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에 와가지고 그래 附則問題를 가지고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合意가 안되었던 것 아닙니까? 國民들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 것입니까?

民主主義한다는 政黨에서 民主主義를 하겠다는 지금 이 體制에서 民主主義 基調가 뭐요? 議會主義여! 代議政治 活性化가 民主主義야! 少數意見을 收斂할 줄 알아야 해! 여기에 국민당을 포함해서 우리 新民黨 無所屬 56名이란 國會議員이 있어! 이렇게 民正黨하고 統一民主黨하고 싸잡아서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보따리로 무슨 主人없는 송장 치는 式으로 막 치고서 도망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 한심합니다.

지금 이 改憲試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9次에 긍해서 改憲을 해서 10次改憲을 잉태를 前提로 하고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은 40年만에 한번 오는 것이니까 國民을 위한 國民의 憲法이 돼야 한다 그러니 國民들한테 한번쯤은 밝히자…" 지난 4次會議때 決議된 것이 있어요. 公聽會 全國 일곱個 地域에 하자고 그랬어요. 일곱個 하자고 해놓고 싹 씻어 버렸어!

民正黨에서는 그 때 內閣責任制案이 나왔어 여기…… 新民黨에서는 그 당시 大統領直選制를 들고 나왔고 그 때 여기 나와서 여기서 試案說明정도 했다 이 말이야! 그 후에 憲特에서 뭐 말 한마디 한 것이 없어! 무슨 改憲試案이 나와야 할 것 아니야 憲特委에 提出돼야 할 것 아니야!

지금 「메모」紙 하나 갖다 놓고 比較文 있으니까 比較해 봐… 이 자리에 와서 전부 試案說明을 하라 이거야, 그래 가지고 本委員이 그래서 지난 번에 일곱번으로 決定이 났는데 시간도 없다고 그러니 이것은 國民的 大和合에 의해서 열화같은 輿望에 의해서 어떤 形態로든간에 改憲이 돼야 된다… 거기에는 積極 贊成합니다.

그런데 改惡을 만들어서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公聽會 한 번을 꼭 열어달라 라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했읍니다. 아! 그것 相議해 보자고 그래놓았는데 지금 公聽會가 무슨 公聽會야! 이것 公聽會도 하나 안 열고 이것 憲特 全體會議가 내가 알기에는 두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방망이 치고 한번 열고 지금와서 이것 뭐 하자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 國民들 이렇게 우롱하고 이렇게 협잡들해도 되는 것이에요? 非民主性에 대한 歷史의 審判을 免치 못할것이요

○趙鍾益委員 말 조심해요! 협잡이 뭐예요? 신성한 議事堂에서 협잡이 뭐예요?

○委員長 蔡汶植 申敬說委員 議事進行만 하시고 他黨과 他人에 관계되는 말씀은 좀……

○申敬說委員 이것은 완전히 計略이야 計略… 計略內容을 밝혀!

○金琦鎭委員 말 삼가해! 小委員會에서는 말 한마디 안해 놓고 뭐 이제와서 큰소리하고 있어! 저런 사람이 新民黨 代表입니까?

○申敬說委員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再考를 해 달라는 것이에요. 여기 憲特에서…

○崔容安委員 좀 들어보시오! 들어보시고…

○委員長 蔡汶植 조용히 하세요! 議事進行만 하세요.

○申敬說委員 할 얘기 있으면 여기 나와서 議事進行發言 얻어서 나와서 하라고… 그리고 여기

서 委員會에서 이것을 다시 再檢討를 해서 여기에서 다시 해주기를 바라고…

○金琫鎬委員 저것이 議事進行發言이에요?

○委員長 蔡汶植 金琫鎬委員! 조용히 하세요. 申委員! 議事進行發言에 局限해서 發言하세요.

○申敬說委員 그러니까 全體 憲特委員들의 意思를 들어서 여기서 再檢討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내가 提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8人會談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여기에서 만들어 놓은 이 비지떡 같은 것 이것을 통과시켜요? 合意 안됐어요! 어떻게 與野合意야! 民正黨하고 統民黨만 合意한 것이야. 新民黨은 合意 안했어! 그것은 분명히 해!

그래서 이것이 원만히 國民들앞에 떳떳한 改憲이 되려면 4黨合意를 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完全合意를 해서 成案을 해서 發議를 해줬으면 하는 것을 本委員이 바라고 그것이 하나의 希望事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委員님들께서는 여기에서 지금 表決에 부칠 것이냐 合意가 아니면 表決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表決을 하든 뭐를 하든 그것은 여기 우리 委員長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4黨 全體會議에서 4黨 全體會議를 통해서 다시 이 憲法機構 憲特에서 合意를 해서 發議를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4者會談 인정 못해요. 우리는… 우리는 인정을 못해! 우리 新民黨에서는 4者會談이든 무슨 會談이든 알 바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여러 委員들께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조금 뭐 장황하게 時間이 길어진 모양인데 일부 여기 統民黨委員들이 분개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議事進行發言을 얻어서 나와서 의사를 開陳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제가 議事進行發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蔡汶植 지금 申委員 말씀 가운데 우리가 憲法改惡이다… 우리가 改正을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좀 自虐的인 좀 過한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원만히 모든 것을 進行하려는데 큰 도움이 안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議事進行發言이 있기 전에 우리 起草小委員長께서 약간 報告에 添加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또 지금 申敬說委員 議事進行發言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만히 하기 위해서 **韓錫奉委員** 議事進行에 局限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韓錫奉委員 존경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先輩委員 여러분!

본인은 12代國會에 參與해서 國民的 合意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 改憲에 積極的으로 贊成합니다마는 130條의 條項중 우리 新民黨이 合意하지 않았던 前文을 비롯한 3個項과 또 憲法機關인 본인으로서 이 憲法만은 毒素條項이기 때문에 바꾸어져야만이 다시는 改憲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이 憲法을 改憲하는 과정에서 우리 國民的 合意에 의해서 民主的인 節次에 의해 이 憲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民主黨과 民正黨은 次期 執權黨이라는 前提아래 憲法을 만들다 보니까 野黨委員의 뜻과 國民의 뜻이 반영되지 않고 지금까지 해 내려오던 執權黨이 執權黨의 視角에서 만든 憲法과 별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은 고쳐져야 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지난 改憲特委에서 우리는 TV中繼때문에 野黨에서 1年동안 끌면서 憲特 한번 열지를 못했읍니다.

TV中繼를 憲特에서 論議해야 되느냐 해야 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1年동안 空轉했던 이 憲特이 改憲作業이 公聽會 한번 開催하지 않고 1千萬 農民의 意思와 1千萬 勤勞者의 意思와 30萬 敎師는 물론 學界 言論界 各界各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히 憲特縮小審議도 아닌 兩黨의 8名이 모여서 密室에서 만들어지는 불행한 憲法이 小委員會를 거쳐서 또다시 憲特委員會案으로 결정되는 悲劇的인 이 순간에 憲特委의 한 사람으로써 부끄럽게 생각하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번 憲法은 現 憲法과 大統領直選制를 제외하고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읍니다. 물론 4千萬 民族의 絶對的인 염원이 大統領直選制입니다. 大統領直選制 改善하나만 하더라도 憲法에 改憲은 의미가 있읍니다.

그러나 어차피 憲法을 만드는 중에는 더욱더

民主的이고 더욱더 合憲的이고 國民의 여망에 맞는 憲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 현재 熱火와 같이 일어나고 있는 勞使紛糾의 1千萬 勤勞者의 權益을 보호하는 勤勞基本法 保障이 없는 憲法입니다.

지금 敎育自治制를 주장하고 있읍니다마는 내일의 主役을 양성하는 後進의 敎育에 專念하는 30萬 敎育者의 여망인 敎育自治制에 대한 民主意志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民主主義는 三權分立이 原則입니다마는 司法權의 獨立이 과거와 같이 별다른 것 없이 保障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갈 길이 바쁘다고 해서 옷을 벗고 밖에 나갈 수는 없읍니다.

아무리 우리가 改憲의 時間이 촉박하다 하더라도 基本規格을 맞추어 놓지 않고는 갈 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이 憲特을 통해서 逐條審議하고 충분히 論議하고 난 다음에 發議하더라도 하루가 더 가더라도 國民이 여망하고 진정으로 民主的인 憲法을 우리는 만들어야 할 歷史的인 책임을 지고 있읍니다.

그 하나 하나 더듬어 보면 우리… 앞서 申敬說 先輩님께서도 주장했읍니다마는 前文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뿌리없는 나무가 없고 祖上없는 後孫없듯이 한 나라의 憲法을 만드는데 檀君의 開國精神이 담겨지지 않은 前文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檀君의 開國精神만은 이번 憲法에 꼭 삽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두번째 憲法 第3條에 대한 領土問題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金璋鎭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까? 討論이요 議事進行發言이요?

○委員長 蔡汶植 韓委員! 韓委員! 지금 議事進行發言에 局限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韓錫奉委員 제 議事進行發言은 玄敬大 小委員長님이 제출한 小委員會案을 議事進行으로서 부당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案을 이렇게 合意하지 않은 案을 合意한 것처럼 여기에 案을 내느냐 우리 小委員會에서는 분명히 合意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80年代에 들어와서 우리는 北韓과 中共이 白頭山 領土問題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어 지고 있읍니다.

中共은 北韓에게 一般的으로 淸太祖의 「누르하치」神話說에 기인해서 白頭山을 讓渡할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北韓이 白頭山 一部를 양보했다는 說도 있읍니다.

지금 현재 中共은 年前 「홍콩」을 英國과 協商해서 平和的으로 그 땅을 되돌려 받습니다. 우리는 白頭山뿐만 아니라 1909年에 우리나라와의 協約이 아닌 淸나라와 日本이 맺은 協約에 의해서 一方的으로 빼앗긴 間島의 全 領土가 우리 땅이므로 명백히 우리의 領土權을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大韓民國의 領土의 국한은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에 속한다는 말 뿐만 아니라 間島地域의 領土를 우리 大韓民國의 領土로 넣어야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꼭 우리 大韓民國의 잃어버린 땅을 찾을 수 있는 轉機가 된다고 봅니다.

세번째 保安處分問題입니다마는 이 保安處分問題는 지금 이 시간에도 民正黨과 民主黨이 人權問題로 수없이 논의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軍事獨裁에게 1人獨裁에게 얼마나 彈壓을 받고 人權을 侵害당했읍니까? 그렇게 侵害당한 이 保安處分의 문제가 어떻게 해서 그토록 주장하는 野黨이 合意해서 保安處分을 그대로 존속시키는지 이것은 분명히 改正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번째 選擧年齡에 대한 문제입니다. 國民主權行使의 選擧年齡은 國民의 基本權입니다. 이 基本權은 분명히 憲法에 明示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下位法의 合意事項으로 한 것도 우리의 投票行使할 수 있는 主權을 下位法으로 만들었다는 그 자체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또 한가지 國政監査權 復活의 未備點입니다. 지금 兩黨에서는 國政監査權을 復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國會의 機能이 立法府의 機能이 法을 만드는 機能과 豫算과 決算을 審議하고 그 이전에 行政府를 牽制 批判 監督하는 機能은 매우 중요한 機能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國政監査權을 復活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하나도 復活되지 않았읍니다. 國政監査權을 復活하고 난 다음에는 定期監査와 特別監査를 할 수 있다는 條項이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立法府가 行政府를 牽制한다는 것은

三權分立 側面에서는 어떻게 타당할 것 같으나 野黨이 行政府를 牽制할 수 있는 機能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定期監査와 特別監査가 없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國政調査權 한번도 아직까지 執權 與黨에서 發動하지 않았읍니다. 만일의 경우에 엄청난 큰 事件이 생겼을 때 執權黨이 國政監査權을 發動하겠느냐 라는 문제입니다.

또한 豫算을 얼마나 줄 것이냐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승인해 준 豫算을 政府가 어떻게 바람직하게 썼나를 審査하는 것도 監査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監査는 바로 豫算審議 전에 國政監査權이 定期的으로 꼭 있어야만이 國會의 權威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第64條에 있는 國務委員 解任建議權은 우리 申敬說委員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읍니다. 國會의 機能이 國務委員 解任決議權이 없고 建議權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 國會議員 스스로가 國會의 權威를 말살하고 權威를 추락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만일의 경우에 國務委員 解任決議權이 없는 國政監査는… 우리가 國政監査 결과가 市長이 잘못했다 郡廳이 잘못했다 해서 누구에게 그 責任을 묻습니까? 國政監査權을 復活하는데서는 그 자체도 미비하지마는 國務委員解任決議權은 꼭 있어야 합니다.

第70條 大統領任期 單任條項입니다. 지금 大統領 單任任期條項은 5年으로 되어 있는 것은 「멕시코」같은 나라밖에 없읍니다. 우리가 우리의 民主主義하는 입장에서 古典的 民主主義 입장에서 4年重任制라는 것은 美國을 위시해서 우리 귀에 많이 익은 條項입니다. 이번 改憲에 있어서 특수한 사정이나 특수한 政黨의 與件이 있어서 5年만의 單任이 꼭 필요하다면 憲法 附則에 붙이고 憲法에는 다시 改正하지 않도록 4年重任으로 明示해 두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第67條4項의 大統領 被選擧權의 居住要件 削除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外國에서 反韓活動을 하고 있다가도 不純勢力의 不純資金을 가지고 갑자기 大統領에 立候補하여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大統領의 有故時에 그를 代行하는 사람이 國務總理를 비롯해서 連次的으로 國務委員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우리 國民의 손으로 직접 뽑았던 副統領이 大統領 有故時에 그 大統領의 任務를 代行하는 것이 正統性問題나 國民的 合意에서 더 나을 것이며 지금의 시대는 專門化時代 産業化時代 科學化時代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입장에 大統領의 權限은 副統領이 서로 맞추어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확실히 하세요」하는 이 있음)

끝으로 龍을 그리는데 龍의 모든 그림을 다 그렸다고 해서 龍의 머리를 그리지 않고서야 그 龍의 價値가 없읍니다. 호랑이를 그리는데 호랑이를 다 그리고 호랑이 입과 이빨을 그리지 않으면 호랑이의 勇猛性을 나타낼 수가 없읍니다. 아무리 바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조그마한 몇 개의 條項이 우리 議會民主主義나 代議政治에 있어서 진정한 民主主義의 합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條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委員님께서는 우리가 정 어려운 條項 고쳐야 할 條項을 이 憲特에서 충분히 論議해서 토론해서 고쳐줄 것을 말씀드리며 그것을 위해서 民主的이고 合法的 逐條審議를 기다리면서 잠시 停會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蔡汶植 議事進行에 反하는 發言 또는 다른 政黨 또 다른 사람들의 권위라든가 위신에 관련되는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 會議에서 또 앞으로 우리 國會에서 안나와 주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것으로 辛基夏委員께서 議事進行 신청한 것 이렇게… 그만 됐읍니까?

○林鍾基委員 委員長!

○委員長 蔡汶植 지금 議事進行發言 또 있읍니까?

議事進行發言만 하세요.

○林鍾基委員 林鍾基올시다.

本委員이나 여러분이나 改憲에 대해서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反對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읍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時間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를 해야 하고 記錄에 남겨야 할 것은 記錄에 남겨야 하고 내일에 예측할 수 있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남아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 國會의 憲特이 이와같은 進行으로써 올바른 改憲이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疑問을 갖습니다. 왜그러느냐? 설사 條文 하나하

나카 아무리 民主的이라고 하더라도 그 全體를 볼 때에 拔萃改憲이나 縫合的인 그러한 면이 없는가? 또 그 改正過程이나 혹은 그 절차에 있어서 非民主的이거나 野合的이거나 政略的인 그러한 점이 없는가? 만약에 그러한 것이 있다면 설사 그 憲法은 民主的인 것이 되더라도 歷史的인 판단은 결코 民主的인 改憲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憲法은 施行過程에서 파기되거나 혹은 정지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改正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運命과 위험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우리 國會憲特이 물론 國會밖에 8人政治會談 4人政治會談이 있었읍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國會의 憲特이 4黨의 改憲案 試案 하나 內容을 훑어 보지도 아니하고 또 8人政治會談 4人政治會談에서 합의된 條項 하나 報告조차도 아니하고 報告조차도 받지 아니하고 兩大政黨이 政治的으로 합의를 했다고 해서 이 憲特 自體가 그대로 말 한 자리 없이 國民의 소리 한 자리 말하는 사람없이 改憲案을 이 자리에서 本會議로 發議한다는 것은 良心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는 없을 것이올시다.

설사 今日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은 明日에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4人會談이나 憲特에서 和하되 同할 수는 없읍니다. 우리 全國民의 輿望인 改憲을 위해서 和하되 그러나 同할 수는 없읍니다. 저는 옛날의 어느 선비의 詩 한 句節을 이 자리에서 남기면서 國會憲特委員으로서의 責任을 歷史上에 다하지를 못했다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이 자리를 떠날까 합니다.

"世路 少知音하니 燈前 萬里心이로다" 세상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의 좋은 의견을 듣지 아니하니 燈 앞에서 내 마음이 멀리 갈 수 밖에 없다는 그러한 뜻이올시다.

아무쪼록 우리 憲特委員들 歷史上에 汚名을 남기지 않는 그러한 진지하고도 겸허한 자세로써 오늘 이 憲特을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議事進行發言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蔡汶植 金玉仙委員 議事進行發言 하시겠읍니까?

○金玉仙委員 小委員長에게 다 一任하겠읍니다.

○委員長 蔡汶植 에. 되었읍니다. 그러면 우리 小委員長이 그 報告하신데 첨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小委員長 玄敬大 申敬說委員님과 韓錫奉委員님 林鍾基委員님 세 분 委員님께서 議事進行發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과 관련해서 저의 報告에 添言해서 몇가지 말씀을 더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報告에서도 이미 저희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民正黨과 新民黨과의 4人政治會談에서 合意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議事進行發言을 통해서 新民黨委員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 그대로 憲法改正起草 10人小委員會에서도 같은 취지의 發言이 주장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小委員會는 열 분의 委員으로 構成이 되어 있고 申敬說委員님을 제외한 아홉 분의 委員이 모두 지금 委員님들께 配布해 드린 내용과 같은 趣旨로 憲法改正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의 일치가 있었기 때문에 다만 申敬說委員께서 주장하신 내용은 저희 小委員會의 議事錄에 登載해서 記錄으로 남기고 우리 小委員會의 案으로는 지금 委員님 여러분들께 配布해 드린 그 내용으로 확정을 시켰다하는 것을 첨가해서 다시 報告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追加해서 여러 委員님께 報告드릴 事項은 起草小委員會에서 改憲案 起草를 하는 과정중에 金玉仙委員님을 비롯해서 여러 委員님 또 한글학회 會員 기타 여러 곳에서 改正하는 마당에 우리 憲法의 條文을 가능한 限 한글로 써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 있었읍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文字의 文化라고 하는 특히 法律文化라고 하는 것은 그 時代相을 時代의 文化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法律이 갖고 있는 屬性 때문에 전부를 한글化하는 것은 도저히 不可能한 것이고 다만 法制處에서 法律을 한글化하기로 되어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오해가 없을 이해하기 쉬운 範圍內에서 가능한 限 한글을 많이 썼다고 하는 사실을 委員님 여러분께 報告를 드립니다. 現行憲法에 비해서 改正憲法에서는 약 20%정도가 더 많이 한글化 되었다고 하는 것을 條文 對比表를 보시면은 委員님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추가해서 몇 말씀을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蘇汶植 자 이제 議事進行發言 더 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바깥에 계신 분들 다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우리가 玄敬大小委員長으로부터 자세한 報告를 들었읍니다. 그래서 지금은 憲法改正案 起草小委員會에서 起草한 憲法改正案을 그대로 接受해서 우리 委員會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읍니다」하는 이 많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參 照)

大 韓 民 國 憲 法 改 正 案

提案年月日 : 1987. 9.
提 案 者 :

提案理由

우리는 1948年7月17日 大韓民國政府樹立의 기초가 된 憲法을 制定·公布한 이래 8次에 걸친 憲法改正을 경험하였다.

이제 第12代國會의 與·野議員은 지난 39年間 겪은 귀중한 憲政史的 敎訓을 거울 삼고 우리 國民의 創意와 勤勉으로 이룩한 經濟成長과 더불어 꾸준히 變化·成熟되어 온 民主力量과 多樣化된 民意를 폭넓게 受容하여 大韓民國 憲政史의 새로운 章을 여는 合意改憲案을 提案함으로써, 國民 모두의 同意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自由民主主義 理念과 體制를 더욱 확고히 계승·발전시키고 祖國의 平和統一基盤을 공고히 하여 세계 속에 雄飛하는 2千年代의 새 歷史 創造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지난 第12代總選 이후 우리 社會는 改憲問題를 둘러싸고 葛藤과 對立 그리고 混亂을 거듭하기도 하였으나 마침내 國民大化合을 이룩하여 우리 歷史上 처음으로 與·野 合意에 의하여 大統領直選制의 憲法改正案을 提案할 수 있게 되었다.

이 憲法改正案은 與·野 政黨間에 合意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國會 내의 모든 交涉團體代表 등이 참여한 憲法改正特別委員會에서 滿場一致로 起草·成案한 것을 그대로 提案하는 등 國民的 合意를 導出하는데 필요한 모든 節次를 거친 것으로서 참다운 民主化 時代의 展開를 향한 國民的 輿望과 政治人의 時代的 使命이 함께 담긴 것이다.

이 憲法改正案의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大統領直選制의 採擇으로 國民의 直接選擧에 의한 政府選擇을 보장함과 아울러, 大統領單任制에 기한 平和的 政權交替의 傳統을 계승 확립함으로써 民主國家發展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둘째, 大統領의 非常措置權·國會解散權의 폐지를 통하여 大統領의 權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國政監査權을 부활하는 등 國民의 代表機關인 國會의 權限을 강화하여 그 機能을 활성화함으로써 國家權力의 균형과 調和를 도모하였으며, 法官의 任命節次 개선과 憲法裁判所의 新設 등을 통하여 司法權의 獨立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憲法의 實效性을 提高하였다.

세째, 拘束適否審査請求權의 전면보장, 刑事補償制度의 확대, 犯罪被害者에 대한 國家救助制 新設 등 國民의 身體와 生命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言論·出版·集會·結社에 대한 許可·檢閱의 금지 등 表現의 權利를 최대한 보장하며, 勞動3權의 실질적 보장과 最低賃金制의 실시 등 勤勞者의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확충하여 基本的 人權을 대폭 伸張하였다.

네째, 經濟秩序에 관하여는 自由經濟體制의 原理를 근간으로 하면서 적정한 所得의 分配, 地域經濟의 균형발전, 中小企業과 農·漁民 보호 등을 통하여 모든 國民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國民生活의 기본적 需要를 충족시키는 社會正義를 실현하도록 하였다.

主要骨子

1.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의 계승 및 祖國의 民主改革의 使命을 명시함(案前文).
2. 在外國民에 대한 國家의 保護義務를 規定함(案第2條第2項).
3. 民主的 基本秩序에 입각한 平和的 統一政策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규정을 新設함(案第4條).
4. 國軍의 政治的 中立性 遵守를 명시함(案第5條第2項).
5. 政黨은 組織·活動 외에 그 目的도 民主的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며, 政黨의 解散은 憲法裁判所의 審判에 따르도록 함(案第8條第2項 및 第4項).

6.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 또는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逮捕·拘束·押收·搜索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도록 함(案第12條第1項 및 第2項).
7. 逮捕·拘束時 그 이유와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告知할 義務 및 家族 등에게 그 이유·日時·場所를 통지할 義務規定을 新設함(案第12條第5項).
8. 모든 拘束者에 대하여 拘束適否審査請求가 가능하도록 함(案第12條第6項).
9. 言論·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閱의 禁止 및 集會·結社에 대한 許可禁止 規定을 新設함(案第21條第2項).
10. 通信·放送의 施設基準과 新聞의 機能保障에 필요한 사항을 法律로 정하도록 함(案第21條第3項).
11. 科學技術者의 權利를 法律로서 보호하도록 함(案第22條第2項).
12. 財産權의 收用 등에 대하여 法律의 規定에 의한 정당한 補償을 支給하도록 함(案第23條第3項).
13. 軍事施設에 관한 罪를 범한 民間人에 대하여는 軍事法院의 裁判管轄에서 제외함(案第27條第2項).
14. 刑事被害者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件의 裁判節次에서 陳述할 수 있도록 함(案第27條第5項).
15. 刑事被疑者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法律이 정하는 不起訴處分을 받은 경우에도 補償을 받을 수 있도록 刑事補償制度를 확대함(案第28條).
16. 他人의 犯罪行爲로 인하여 生命·身體에 被害를 받은 國民에 대한 國家救助制度를 新設함(案第30條).
17. 大學의 自律性을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함(案第31條第4項).
18. 勤勞者의 最低賃金制를 실시하도록 함(案第32條第1項).
19. 女子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雇傭·賃金 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案第32條第4項).
20. 團體行動權 행사의 法律留保條項을 削除하고, 法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案第33條第1項 및 第3項).
21. 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向上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老人과 青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實施할 義務 및 災害豫防努力義務를 國家에 賦課함(案第34條第3項·第4項 및 第6項).
22. 環境權 規定에 國民이 快適한 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住宅開發政策의 실시를 추가하여 規定함(案第35條第3項).
23. 婚姻·家族·健康에 관한 權利에 母性保護 規定을 추가함(案第36條第2項).
24. 國會臨時會 召集要件을 "在籍議員 3分의 1 이상"에서 "在籍議員 4分의 1 이상"으로 緩和하고, 定期會 會期를 "90日"에서 "100日"로 연장하였으며, 年間開會日數 制限規定을 削除하고, 大統領이 요구한 臨時會에서의 處理案件 制限規定을 削除함(案第47條).
25. 國會는 國政을 監査하거나 특정한 國政事案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도록 國政監査權을 復活하고 國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 節次는 法律로 정하도록 함(案第61條).
26. 國會의 國務總理·國務委員에 대한 解任議決權을 解任建議權으로 變更함(案第63條).
27. 大統領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하도록 하고, 最高得票者가 2人 이상인 경우 國會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출석한 公開會議에서 當選者를 決定하도록 하며, 大統領候補者가 1人일 때에는 選擧權者 總數의 3分의 1 이상 得票하여야 當選되도록 함(案第67條第1項·第2項 및 第3項).
28. 大統領의 被選擧權이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고 選擧日 현재 40歲에 達한 者로 함(案第67條第4項).
29. 大統領의 後任者選擧는 任期滿了 70日 내지 40日 전에 하되, 大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60日 이내에 하도록 함(案第68條).
30. 大統領의 任期를 5年 單任으로 함(案第70條).

31. 大統領의 非常措置權을 削除하고, 緊急財政經濟處分 및 命令權과 緊急命令權을 大統領에게 부여함(案第76條).
32. 大統領의 國會解散權을 削除함(現行第57條).
33. 大統領의 權限調整에 따라 國務會議의 審議事項을 變更함(案第89條).
34. "國政諮問會議"는 "國家元老諮問會議"로,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는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로 名稱을 變更함(案第90條 및 第92條).
35. 大統領의 諮問機關으로 國民經濟諮問會議를 新設함(案第93條).
36. "大法院判事"를 "大法官"으로 하고, 大法官은 大法院長의 提請으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도록 함(案第102條第2項 및 第104條第2項).
37. 一般法官은 大法官會議의 同意를 얻어 大法院長이 任命하도록 함(案第104條第3項).
38. 大法院長의 任期는 6年 單任으로 하며, 大法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도록 함(案第105條第1項 및 第2項).
39. 法官은 彈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 없이는 罷免되지 아니하도록 함(案第106條第1項).
40. "軍法會議"를 "軍事法院"으로 名稱을 變更하고, 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의 單審制에 있어서 死刑을 선고한 경우는 제외함(案第110條).
41. 憲法委員會를 폐지하고, 憲法裁判所를 新設하여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審判, 彈劾의 審判, 政黨의 解散審判 및 國家機關相互間 등의 權限爭議에 관한 審判과 法律이 정하는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을 管掌하도록 함(案第111條第1項).
42. 憲法裁判所는 法官의 資格을 가진 9人의 裁判官으로 구성하며, 大統領이 任命하되, 9人 중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하고 憲法裁判所의 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裁判官 중에서 任命하도록 함(案第111條第2項·第3項 및 第4項).
43. 憲法裁判所 裁判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도록 하며, 政黨加入을 禁止하고, 彈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 없이는 罷免되지 아니하도록 함(案第112條).
44. 憲法裁判所에서 違憲決定, 彈劾決定, 政黨解散의 決定 또는 憲法訴願에 관한 認容決定을 함에는 6人 이상의 賛成을 요하도록 함(案第113條第1項).
45. 中央選擧管理委員會 委員의 任期를 現行 5年에서 6年으로 연장하고, 彈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 없이는 罷免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도록 함(案第114條第3項·第5項 및 第6項).
46. 國家는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成長 및 安定과 적정한 所得分配를 유지하고, 市場支配와 經濟力의 濫用을 방지하며, 經濟主體間의 調和를 통한 經濟의 民主化를 위하여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도록 함(案第119條第2項).
47. 國家는 農地에 관하여 耕者有田의 원칙이 達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農地의 小作制度를 금지함(案第121條第1項).
48. 農業生産性 提高와 農地의 合理的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事情으로 발생하는 農地의 賃貸借와 委託經營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됨(案第121條第2項).
49. 國土는 國民 모두의 生産 및 生活의 基盤이 된다는 점을 명시함(案第122條).
50. 國家는 農業 및 漁業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農·漁村 綜合開發과 그 지원 등에 필요한 計劃을 수립·施行하도록 함(案第123條第1項).
51. 國家의 균형있는 地域經濟育成義務를 新設함(案第123條第2項).
52. 國家는 農水産物의 需給均衡과 流通構造의 개선에 노력하여 價格安定을 도모하도록 함(案第123條第4項).
53. 國家는 農·漁民과 中小企業의 自助組織의 自律的 活動과 발전을 보장함(案第123條第5項).
54. 國家는 科學技術의 革新과 情報 및 人力의 開發을 통하여 民主經濟의 발전에 노력하도록 함(案第127條第1項).
55. 이 憲法의 施行日을 1988年 2月 25日로 하고, 이 憲法施行에 필요한 法律의 制定·改正과 大統領

및 國會議員의 選擧 기타 이 憲法施行에 관한 準備는 이 憲法施行 전에 할 수 있도록 함(案附則 第1條).

56. 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選擧는 이 憲法施行日 40日 전까지 실시하며, 최초의 大統領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開始함(案附則 第2條).

57. 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國會議員選擧는 이 憲法公布日로부터 6月 이내에 실시하며, 최초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최초의 國會議員選擧 후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로부터 開始하도록 하고, 이 憲法公布 당시의 國會議員 任期는 최초의 國會議員選擧 후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 前日까지로 함(案附則 第3條).

58. 이 憲法施行 당시의 公務員과 政府가 任命한 企業體의 任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보고, 이 憲法에 의하여 選任方法이나 任命權者가 변경된 公務員과 大法院長 및 監査院長은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하며 그 任期는 後任者가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하고, 이 憲法施行 당시의 大法院長과 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은 이 憲法에 의하여 選任方法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보며, 이 憲法 중 公務員의 任期 또는 重任制限에 관한 規定은 이 憲法에 의하여 그 公務員이 최초로 選出 또는 任命된 때로부터 適用하도록 함(案附則 第4條).

59. 이 憲法施行 당시의 法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한 그 效力을 지속함(案附則 第5條).

60.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 設置될 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職務를 행하고 있는 機關은 새로운 機關이 設置될 때까지 存續하며 그 職務를 행하도록 함(案附則 第6條).

大 韓 民 國 憲 法 改 正 案

大韓民國憲法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大 韓 民 國 憲 法

前 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民國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7月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1987年 月 日

第 1 章 總 綱

第1條 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2條 ①大韓民國의 國民이 되는 요건은 法律로 정한다.

②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在外國民을 보호할 義務를 진다.

第3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第4條 大韓民國은 統一을 指向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입각한 平和的 統一政策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第5條 ①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유지에 노력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

②國軍은 國家의 安全保障과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수행함을 使命으로 하며, 그 政治的 中立性은 준수된다.

第6條 ①憲法에 의하여 締結·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승인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②外國人은 國際法과 條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位가 보장된다.

第7條 ①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②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第8條 ①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

②政黨은 그 目的·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

③政黨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黨運營에 필요한 資金을 補助할 수 있다.

④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憲法裁判所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裁判所의 審判에 의하여 解散된다.

第9條 國家는 傳統文化의 繼承·發展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 2 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

第11條 ①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敎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③勳章 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第12條 ①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束·押收·搜索 또는 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 또는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

③逮捕·拘束·押收 또는 搜索을 할 때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長期 3年 이상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범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의 이유와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가 있음을 告知받지 아니하고는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하지 아니한다.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者의 家族 등 法律이 정하는 者에게는 그 이유와 日時·場所가 지체없이 通知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適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⑦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부당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處罰할 수 없다.

第13條 ①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訴追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犯罪에 대하여 거듭 處罰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제한을 받거나 財産權을 剝奪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親族의 행위로 인하여 不利益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14條 모든 國民은 居住·移轉의 自由를 가진다.

第15條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第16條 모든 國民은 住居의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住居에 대한 押收나 搜索을 할 때에는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第17條 모든 國民은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第18條 모든 國民은 通信의 秘密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第19條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第20條 ①모든 國民은 宗教의 自由를 가진다.

②國教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教와 政治는 分離된다.

第21條 ①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②言論·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閱과 集會·結社에 대한 許可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通信·放送의 施設基準과 新聞의 機能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④言論·出版은 他人의 名譽나 權利 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言論·出版이 他人의 名譽나 權利를 침해한 때에는 被害者는 이에 대한 被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2條 ①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②著作者·發明家·科學技術者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보호한다.

第23條 ①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다.

②財産權의 행사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使用 또는 制限 및 그에 대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되, 정당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第24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擧權을 가진다.

第25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擔任權을 가진다.

第26條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27條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軍人 또는 軍務員이 아닌 國民은 大韓民國의 領域 안에서는 중대한 軍事上 機密·哨兵·哨所·有毒飮食物供給·捕虜·軍用物에 관한 罪 중 法律이 정한 경우와 非常戒嚴이 宣布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事法院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④刑事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

⑤刑事被害者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件의 裁判節次에서 陳述할 수 있다.

第28條 刑事被疑者 또는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法律이 정하는 不起訴處分을 받거나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정당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9條 ①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정당한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務員 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②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 기타 法律이 정하는 者가 戰鬪·訓練 등 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補償 외에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

第30條 他人의 犯罪行爲로 인하여 生命·身體에 대한 被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로부터 救助를 받을 수 있다.

第31條 ①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敎育과 法律이 정하는 敎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義務敎育은 無償으로 한다.

④敎育의 自主性·專門性·政治的 中立性 및 大學의 自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國家는 平生敎育을 振興하여야 한다.

⑥學校敎育 및 平生敎育을 포함한 敎育制度와 그 운영, 敎育財政 및 敎員의 地位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32條 ①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經濟的 방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과 適正賃金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賃金制를 施行하여야 한다.

②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내용과 조건을 民主主義原則에 따라 法律로 정한다.

③勤勞條件의 基準은 人間의 尊嚴性을 보장하도록 法律로 정한다.

④女子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雇傭·賃金 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年少者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國家有功者·傷痍軍警 및 戰歿軍警의 遺家族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優先的으로 勤勞의 機會를 부여받는다.

第33條 ①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②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이 정하는 者에 한하여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③法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34條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⑤身體障碍者 및 疾病·老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⑥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35條 ①모든 國民은 건강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와 國民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環境權의 內容과 行使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③國家는 住宅開發政策 등을 통하여 모든 國民이 快適한 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36條 ①婚姻과 家族生活은 개인의 尊嚴과 兩性의 平等을 기초로 成立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國家는 이를 보장한다.

②國家는 母性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國民은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37條 ①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第38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39條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②누구든지 兵役義務의 이행으로 인하여 不利益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3章 國 會

第40條 立法權은 國會에 속한다.
第41條 ①國會는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된 國會議員으로 구성한다.
②國會議員의 數는 法律로 정하되, 200人 이상으로 한다.
③國會議員의 選擧區와 比例代表制 기타 選擧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42條 國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第43條 國會議員은 法律이 정하는 職을 겸할 수 없다.
第44條 ①國會議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期 중 國會의 同意 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②國會議員이 會期 전에 逮捕 또는 拘禁된 때에는 現行犯人이 아닌 한 國會의 요구가 있으면 會期 중 釋放된다.
第45條 國會議員은 國會에서 職務上 행한 發言과 表決에 관하여 國會 외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46條 ①國會議員은 淸廉의 義務가 있다.
②國會議員은 國家利益을 우선하여 良心에 따라 職務를 행한다.
③國會議員은 그 地位를 濫用하여 國家·公共團體 또는 企業體와의 契約이나 그 處分에 의하여 財産上의 權利·利益 또는 職位를 취득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第47條 ①國會의 定期會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回 集會되며, 國會의 臨時會는 大統領 또는 國會 在籍議員 4分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集會된다.
②定期會의 會期는 100日을, 臨時會의 會期는 30日을 초과할 수 없다.
③大統領이 臨時會의 集會를 요구할 때에는 期間과 集會要求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第48條 國會는 議長 1人과 副議長 2人을 選出한다.
第49條 國會는 憲法 또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第50條 ①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거나 議長이 國家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公開하지 아니한 會議內容의 公表에 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51條 國會에 제출된 法律案 기타의 議案은 會期 중에 議決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國會議員의 任期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2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제출할 수 있다.
第53條 ①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에 移送되어 15日 이내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②法律案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第1項의 期間 내에 異議書를 붙여 國會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國會의 閉會 중에도 또한 같다.
③大統領은 法律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法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요구할 수 없다.
④再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再議에 부치고,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확정된다.
⑤大統領이 第1項의 期間 내에 公布나 再議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확정된다.
⑥大統領은 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法律을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5項에 의하여 法律이 확정된 후 또는 第4項에 의한 確定法律이 政府에 移送된 후 5日 이내에 大統領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會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⑦法律은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公布한 날로부터 20日을 경과함으로써 效力을 발생한다.

第54條 ①國會는 國家의 豫算案을 審議·確定한다.

②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90日 전까지 國會에 제출하고, 國會는 會計年度 開始 30日 전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會計年度가 開始될 때까지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豫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의 目的을 위한 經費는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執行할 수 있다.

1. 憲法이나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維持·運營
2. 法律上 支出義務의 이행
3. 이미 豫算으로 승인된 事業의 계속

第55條 ①한 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年限을 정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豫備費는 總額으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56條 政府는 豫算에 變更을 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하여 國會에 제출할 수 있다.

第57條 國會는 政府의 同意 없이 政府가 제출한 支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58條 國債를 모집하거나 豫算 외에 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政府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59條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 정한다.

第60條 ①國會는 相互援助 또는 安全保障에 관한 條約, 중요한 國際組織에 관한 條約, 友好通商航海條約, 主權의 制約에 관한 條約, 講和條約, 國家나 國民에게 중대한 財政的 부담을 지우는 條約 또는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②國會는 宣戰布告, 國軍의 外國에의 派遣 또는 外國軍隊의 大韓民國 領域 안에서의 駐留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第61條 ①國會는 國政을 監査하거나 특정한 國政事案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書類의 提出 또는 證人의 출석과 證言이나 의견의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②國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62條 ①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國會나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 國政處理狀況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陳述하고 質問에 응답할 수 있다.

②國會나 그 委員會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出席要求를 받은 때에는 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第63條 ①國會는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解任建議는 國會 在籍議員 3分의 1 이상의 發議에 의하여 國會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64條 ①國會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議事와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며, 議員을 懲戒할 수 있다.

③議員을 除名하려면 國會 在籍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第2項과 第3項의 處分에 대하여는 法院에 提訴할 수 없다.

第65條 ①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 各部의 長·憲法裁判所 裁判官·法官·中央選擧管理委員會 委員·監査院長·監査委員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議決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彈劾訴追는 國會 在籍議員 3分의 1 이상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議決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에 대한 彈劾訴追는 國會 在籍議員 過半數의 發議

와 國會 在籍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彈劾訴追의 議決을 받은 者는 彈劾審判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정지된다.
④彈劾決定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지는 아니한다.

第4章 政 府

第1節 大統領

第66條 ①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이며, 外國에 대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②大統領은 國家의 獨立·領土의 保全·國家의 繼續性과 憲法을 守護할 責務를 진다.
③大統領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를 진다.
④行政權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에 속한다.
第67條 ①大統領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한다.
②第1項의 選擧에 있어서 最高得票者가 2人 이상인 때에는 國會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출석한 公開會議에서 多數票를 얻은 者를 當選者로 한다.
③大統領候補者가 1人일 때에는 그 得票數가 選擧權者 總數의 3分의 1 이상이 아니면 大統領으로 當選될 수 없다.
④大統領으로 選擧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고 選擧日 현재 40歲에 達하여야 한다.
⑤大統領의 選擧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68條 ①大統領의 任期가 만료되는 때에는 任期滿了 70日 내지 40日 전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②大統領이 闕位된 때 또는 大統領 當選者가 死亡하거나 判決 기타의 사유로 그 資格을 喪失한 때에는 60日 이내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第69條 大統領은 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宣誓를 한다.
"나는 憲法을 준수하고 國家를 保衛하며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 및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 앞에 엄숙히 宣誓합니다."
第70條 大統領의 任期는 5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第71條 大統領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 法律이 정한 國務委員의 順序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
第72條 大統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外交·國防·統一 기타 國家安危에 관한 重要政策을 國民投票에 부칠 수 있다.
第73條 大統領은 條約을 締結·批准하고, 外交使節을 信任·接受 또는 派遣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한다.
第74條 ①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軍을 統帥한다.
②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 정한다.
第75條 大統領은 法律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委任받은 사항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大統領令을 발할 수 있다.
第76條 ①大統領은 內憂·外患·天災·地變 또는 중대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있어서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財政·經濟上의 處分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발할 수 있다.
②大統領은 國家의 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交戰狀態에 있어서 國家를 保衛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발할 수 있다.

③大統領은 第1項과 第2項의 處分 또는 命令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國會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第3項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處分 또는 命令은 그때부터 效力을 喪失한다. 이 경우 그 命令에 의하여 改正 또는 廢止되었던 法律은 그 命令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效力을 회복한다.

⑤大統領은 第3項과 第4項의 사유를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77條 ①大統領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 非常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써 軍事上의 필요에 응하거나 公共의 安寧秩序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②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

③非常戒嚴이 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令狀制度,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④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國會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戒嚴의 解除를 요구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第78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員을 任免한다.

第79條 ①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赦免·減刑 또는 復權을 命할 수 있다.

②一般赦免을 命하려면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赦免·減刑 및 復權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80條 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勳章 기타의 榮典을 수여한다.

第81條 大統領은 國會에 출석하여 發言하거나 書翰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第82條 大統領의 國法上 행위는 文書로써 하며, 이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관계 國務委員이 副署한다. 軍事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第83條 大統領은 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 기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겸할 수 없다.

第84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 중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85條 前職大統領의 身分과 禮遇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第2節 行 政 府

第1款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第86條 ①國務總理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며, 行政에 관하여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轄한다.

③軍人은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總理로 任命될 수 없다.

第87條 ①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委員은 國政에 관하여 大統領을 補佐하며, 國務會議의 構成員으로서 國政을 審議한다.

③國務總理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④軍人은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委員으로 任命될 수 없다.

第2款 國務會議

第88條 ①國務會議는 政府의 權限에 속하는 중요한 政策을 審議한다.

②國務會議는 大統領·國務總理와 15人 이상 30人 이하의 國務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되고, 國務總理는 副議長이 된다.

第89條 다음 사항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國政의 基本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
2. 宣戰·講和 기타 중요한 對外政策
3. 憲法改正案·國民投票案·條約案·法律案 및 大統領令案
4. 豫算案·決算·國有財産處分의 基本計劃·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 기타 財政에 관한 중요사항
5. 大統領의 緊急命令·緊急財政經濟處分 및 命令 또는 戒嚴과 그 解除
6. 軍事에 관한 중요사항
7. 國會의 臨時會 集會의 요구
8. 榮典 授與
9. 赦免·減刑과 復權
10. 行政各部間의 權限의 劃定
11. 政府 안의 權限의 위임 또는 配定에 관한 基本計劃
12. 國政處理狀況의 評價·分析
13. 行政各部의 중요한 政策의 樹立과 調整
14. 政黨解散의 提訴
15. 政府에 제출 또는 회부된 政府의 政策에 관계되는 請願의 審査
16. 檢察總長·合同參謀議長·各軍 參謀總長·國立大學校總長·大使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과 國營企業體管理者의 任命
17. 기타 大統領·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제출한 사항

第90條 ①國政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元老로 구성되는 國家元老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國家元老諮問會議의 議長은 直前大統領이 된다. 다만, 直前大統領이 없을 때에는 大統領이 指名한다.

③國家元老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1條 ①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를 둔다.

②國家安全保障會議는 大統領이 主宰한다.

③國家安全保障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2條 ①平和統一政策의 수립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3條 ①國民經濟의 발전을 위한 重要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民經濟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國民經濟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 3 款 行政各部

第94條 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員 중에서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95條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部의 長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法律이나 大統領令의 委任 또는 職權으로 總理令 또는 部令을 발할 수 있다.

第96條 行政各部의 設置·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 정한다.

第 4 款 監査院

第97條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 國家 및 法律이 정한 團體의 會計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

務에 관한 監察을 하기 위하여 大統領 所屬下에 監査院을 둔다.

第98條 ①監査院은 院長을 포함한 5人 이상 11人 이하의 監査委員으로 구성한다.

②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③監査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년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第99條 監査院은 歲入·歲出의 決算을 매년 檢査하여 大統領과 次年度國會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100條 監査院의 組織·職務範圍·監査委員의 資格·監査對象公務員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5章 法 院

第101條 ①司法權은 法官으로 구성된 法院에 속한다.

②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法院으로 組織된다.

③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第102條 ①大法院에 部를 둘 수 있다.

②大法院에 大法官을 둔다. 다만,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法官이 아닌 法官을 둘 수 있다.

③大法院과 各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 정한다.

第103條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

第104條 ①大法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大法官은 大法院長의 提請으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은 大法官會議의 同意를 얻어 大法院長이 任命한다.

第105條 ①大法院長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②大法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③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④法官의 停年은 法律로 정한다.

第106條 ①法官은 彈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하며, 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停職·減俸 기타 不利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②法官이 중대한 心身上의 障害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하게 할 수 있다.

第107條 ①法律이 憲法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法院은 憲法裁判所에 提請하여 그 審判에 의하여 裁判한다.

②命令·規則 또는 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大法院은 이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을 가진다.

③裁判의 前審節次로서 行政審判을 할 수 있다. 行政審判의 節次는 法律로 정하되, 司法節次가 準用되어야 한다.

第108條 大法院은 法律이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訴訟에 관한 節次,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109條 裁判의 審理와 判決은 公開한다. 다만, 審理는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安寧秩序를 방해하거나 善良한 風俗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110條 ①軍事裁判을 관할하기 위하여 特別法院으로서 軍事法院을 둘 수 있다.

②軍事法院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관할한다.

③軍事法院의 組織·權限 및 裁判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④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은 軍人·軍務員의 犯罪나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 哨兵·哨所·有毒飮食物供給·捕虜에 관한 罪 중 法律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單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死刑을 宣告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6 章 憲法裁判所

第111條 ①憲法裁判所는 다음 사항을 管掌한다.

1.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 審判
2. 彈劾의 審判
3. 政黨의 解散 審判
4. 國家機關 相互間,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및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權限爭議에 관한 審判
5. 法律이 정하는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

②憲法裁判所는 法官의 資格을 가진 9人의 裁判官으로 구성하며, 裁判官은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第2項의 裁判官 중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한다.

④憲法裁判所의 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裁判官 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112條 ①憲法裁判所 裁判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②憲法裁判所 裁判官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③憲法裁判所 裁判官은 彈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第113條 ①憲法裁判所에서 法律의 違憲決定, 彈劾의 決定, 政黨解散의 決定 또는 憲法訴願에 관한 認容決定을 할 때에는 裁判官 6人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②憲法裁判所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審判에 관한 節次,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③憲法裁判所의 組織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 7 章 選擧管理

第114條 ①選擧와 國民投票의 공정한 管理 및 政黨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選擧管理委員會를 둔다.

②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3人, 國會에서 選出하는 3人과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3人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委員長은 委員 중에서 互選한다.

③委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④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⑤委員은 彈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⑥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法令의 범위 안에서 選擧管理·國民投票管理 또는 政黨事務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으며,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⑦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115條 ①各級 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人名簿의 작성 등 選擧事務와 國民投票事務에 관하여 관계 行政機關에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指示를 받은 당해 行政機關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16條 ①選擧運動은 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管理下에 法律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機會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選擧에 관한 經費는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第 8 章 地方自治

第117條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利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고 財産을 관리하며, 法令의 범위 안에서 自治에 관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종류는 法律로 정한다.

第118條 ①地方自治團體에 議會를 둔다.

②地方議會의 組織·權限·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方法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 9 章 經 濟

第119條 ①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개인과 企業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함을 基本으로 한다.

②國家는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成長 및 安定과 적정한 所得의 分配를 유지하고, 市場의 支配와 經濟力의 濫用을 방지하며, 經濟主體間의 調和를 통한 經濟의 民主化를 위하여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다.

第120條 ①鑛物 기타 중요한 地下資源·水産資源·水力과 經濟上 이용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期間 그 採取·開發 또는 이용을 特許할 수 있다.

②國土와 資源은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그 균형 있는 開發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計劃을 수립한다.

第121條 ①國家는 農地에 관하여 耕者有田의 원칙이 達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農地의 小作制度는 금지된다.

②農業生産性의 提高와 農地의 合理的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事情으로 발생하는 農地의 賃貸借와 委託經營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第122條 國家는 國民 모두의 生産 및 生活의 基盤이 되는 國土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利用·開發과 보전을 위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義務를 課할 수 있다.

第123條 ①國家는 農業 및 漁業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農·漁村綜合開發과 그 지원등 필요한 計劃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地域間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地域經濟를 육성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中小企業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農水産物의 需給均衡과 流通構造의 개선에 노력하여 價格安定을 도모함으로써 農·漁民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國家는 農·漁民과 中小企業의 自助組織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自律的 活動과 발전을 보장한다.

第124條 國家는 건전한 消費行爲를 啓導하고 生産品의 品質向上을 촉구하기 위한 消費者保護運動을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第125條 國家는 對外貿易을 육성하며, 이를 規制·調整할 수 있다.

第126條 國防上 또는 國民經濟上 緊切한 필요로 인하여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경영을 統制 또는 관리할 수 없다.

第127條 ①國家는 科學技術의 革新과 情報 및 人力의 開發을 통하여 國民經濟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國家標準制度를 확립한다.

③大統領은 第1項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諮問機構를 둘 수 있다.

第 10 章 憲法改正

第128條 ①憲法改正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 또는 大統領의 發議로 提案된다.

②大統領의 任期延長 또는 重任變更을 위한 憲法改正은 그 憲法改正 提案 당시의 大統領에 대하여는 效力이 없다.

第129條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大統領이 20日 이상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130條 ①國會는 憲法改正案이 公告된 날로부터 60日 이내에 議決하여야 하며, 國會의 議決은 在籍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②憲法改正案은 國會가 議決한 후 30日 이내에 國民投票에 붙여 國會議員選擧權者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③憲法改正案이 第2項의 贊成을 얻은 때에는 憲法改正은 확정되며, 大統領은 즉시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附 則

第1條 이 憲法은 1988年2月25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憲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律의 制定·改正과 이 憲法에 의한 大統領 및 國會議員의 選擧 기타 이 憲法施行에 관한 準備는 이 憲法施行 전에 할 수 있다.

第2條 ①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選擧는 이 憲法施行日 40日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開始한다.

第3條 ①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國會議員選擧는 이 憲法公布日로부터 6月 이내에 실시하며, 이 憲法에 의하여 選出된 최초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國會議員選擧후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로부터 開始한다.

②이 憲法公布 당시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第1項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 前日까지로 한다.

第4條 ①이 憲法施行 당시의 公務員과 政府가 任命한 企業體의 任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憲法에 의하여 選任方法이나 任命權者가 변경된 公務員과 大法院長 및 監査院長은 이 憲法에 의하여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하며, 이 경우 前任者인 公務員의 任期는 後任者가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한다.

②이 憲法施行 당시의 大法院長과 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③이 憲法 중 公務員의 任期 또는 重任制限에 관한 規定은 이 憲法에 의하여 그 公務員이 최초로 選出 또는 任命된 때로부터 適用한다.

第5條 이 憲法施行 당시의 法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한 그 效力을 지속한다.

第6條 이 憲法施行 당시에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 設置될 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職務를 행하고 있는 機關은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운 機關이 設置될 때까지 存續하며 그 職務를 행한다.

憲法改正案對比表

現行憲法	改正案
前文	前文
悠久한 民族史, 빛나는 文化, 그리고 平和愛護의 傳統을 자랑하는 우리 大韓民國은 3·1運動의 崇高한 獨立精神을 계승하고,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民族中興의 歷史的 使命에 입각한 第5民主共和國의 출발에 즈음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民國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

現 行 憲 法	改 正 案
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고,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 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하는 새로운 歷史를 創造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7月12日에 制定되고 1960年6月15日, 1962年12月26日과 1972年12月27日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1980年10月25日	를 타파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7月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1987年 月 日
第1章 總 綱	第1章 總 綱
第1條 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1條 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2條 ①大韓民國의 國民의要件은 法律로 정한다. ②在外國民은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2條 ①大韓民國의 國民이 되는 요건은 法律로 정한다. ②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在外國民을 보호할 義務를 진다.
第3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附屬島嶼로 한다.	第3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新 設)	第4條 大韓民國은 統一을 指向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입각한 平和的 統一政策을 수립하고 이를 推進한다.
第4條 ①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維持에 노력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 ②國軍은 國家의 安全保障과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수행함을 使命으로 한다.	第5條 ①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유지에 노력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 ②國軍은 國家의 安全保障과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수행함을 使命으로 하며, 그 政治的 中立性은 遵守된다.
第5條 ①憲法에 의하여 締結 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②外國人에 대하여는 國際法과 條約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地位를 보장한다.	第6條 ①憲法에 의하여 締結·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승인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②外國人은 國際法과 條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位가 보장된다.
第6條 ①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②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第7條 ①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②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現 行 憲 法	改 正 案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第7條 ①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	第8條 ①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
②政黨은 그 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參與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	②政黨은 그 目的·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
③政黨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黨의 運營에 필요한 資金을 補助할 수 있다.	③政黨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黨運營에 필요한 資金을 補助할 수 있다.
④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憲法委員會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委員會의 決定에 의하여 解散된다.	④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憲法裁判所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裁判所의 審判에 의하여 解散된다.
第8條 國家는 傳統文化의 계승·발전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9條 國家는 傳統文化의 계승·발전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 2 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第 2 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第9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個人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確認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	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確認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
第10條 ①모든 國民은 法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教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第11條 ①모든 國民은 法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教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②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③勳章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③勳章 등의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第11條 ①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禁·押收·搜索·審問·處罰과 保安處分을 받지 아니하며,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强制勞役을 당하지 아니한다.	第12條 ①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束·押收·搜索 또는 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 또는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
③逮捕·拘禁·押收·搜索에는 檢事의 申請에	③逮捕·拘束·押收 또는 搜索을 할 때에는

現 行 憲 法	改 正 案
의하여 法官이 發付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長期 3年 以上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	適法한 節次에 따라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發付한 令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長期 3年以上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逮捕·拘禁을 당한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法律이 정하는 경우에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④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逮捕·拘禁을 당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適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⑤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의 理由와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가 있음을 告知받지 아니하고는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하지 아니한다.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者의 家族등 法律이 정하는 者에게는 그 이유와 日時·場所가 지체없이 通知되어야 한다.
⑥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부당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方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유일한 證據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處罰할 수 없다.	⑥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適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⑦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부당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유일한 證據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處罰할 수 없다.
第12條 ①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行爲로 訴追되지 아니하며, 同一한 犯罪에 대하여 거듭 處罰받지 아니한다.	第13條 ①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訴追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犯罪에 대하여 거듭 處罰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제한 또는 財產權의 剝奪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參正權의 제한을 받거나 財產權을 剝奪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자기의 行爲가 아닌 親族의 行爲로 인하여 不利益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親族의 행위로 인하여 不利益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13條 모든 國民은 居住·移轉의 自由를 가진다.	第14條 모든 國民은 居住·移轉의 自由를 가진다.

現 行 憲 法	改 正 案
第14條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第15條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第15條 모든 國民은 住居의 自由를 侵害받지 아니한다. 住居에 대한 押收나 搜索에는 檢査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發付한 令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第16條 모든 國民은 住居의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住居에 대한 押收나 搜索을 할 때에는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發付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第16條 모든 國民은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를 侵害받지 아니한다.	第17條 모든 國民은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를 侵害받지 아니한다.
第17條 모든 國民은 通信의 秘密을 侵害받지 아니한다.	第18條 모든 國民은 通信의 秘密을 侵害받지 아니한다.
第18條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第19條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第19條 ①모든 國民은 宗教의 自由를 가진다. ②國教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教와 政治는 分離된다.	第20條 ①모든 國民은 宗教의 自由를 가진다. ②國教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教와 政治는 分離된다.
第20條 ①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②言論·出版은 他人의 名譽나 權利 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侵害하여서는 아니된다. 言論·出版이 他人의 名譽나 權利를 侵害한 때에는 被害者는 이에대한 被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1條 ①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②言論·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閱과 集會·結社에 대한 許可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通信·放送의 施設基準과 新聞의 機能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④言論·出版은 他人의 名譽나 權利 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侵害하여서는 아니된다. 言論·出版이 他人의 名譽나 權利를 侵害한 때에는 被害者는 이에 대한 被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1條 ①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②著作者·發明家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보호한다.	第22條 ①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②著作者·發明家·科學技術者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보호한다.
第22條 ①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다. ② 財産權의 行使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使用 또는 制限은 法律로써 하되,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補償은 公益 및 關係者의 利益을 정당하게 衡量하여 法律로 정한다.	第23條 ①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다. ②財産權의 행사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使用 또는 制限 및 그에 대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되, 정당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第23條 모든 國民은 20歲가 되면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擧權을 가진다.	第24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擧權을 가진다.
第24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擔任權을 가진다.	第25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擔任權을 가진다.
第25條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	第26條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

現 行 憲 法	改 正 案
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査할 義務를 진다.	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26條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에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軍人 또는 軍務員이 아닌 國民은 大韓民國의 領域안에서는 중대한 軍事上 機密·哨兵·哨所·有害飮食物供給·捕虜·軍用物·軍事施設에 관한 罪중 法律에 정한 경우와, 非常戒嚴이 宣布되거나 大統領이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非常措置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法會議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限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④刑事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確定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	第27條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관한 裁判을 받은 權利를 가진다. ②軍人 또는 軍務員이 아닌 國民은 大韓民國의 領域 안에서는 중대한 軍事上 機密·哨兵·哨所·有毒飮食物供給·捕虜·軍用物에 관한 罪 중 法律이 정한 경우와 非常戒嚴이 宣布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事法院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④刑事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 ⑤刑事被害者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件의 裁判節次에서 陳述할 수 있다.
第27條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정당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8條 刑事被疑者 또는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法律이 정하는 不起訴處分을 받거나 無罪判決을 받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정당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8條 ①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정당한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公務員 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②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 기타 法律로 정하는 者가 戰鬪訓練등 職務執行에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報償外에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	第29條①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정당한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務員 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②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 기타 法律이 정하는 者가 戰鬪·訓練 등 職務執行에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補償 외에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
(新 設)	第30條 他人의 犯罪行爲로 인하여 生命·身體에 대한 被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로부터 救助를 받을 수 있다.

現 行 憲 法	改 正 案
第29條 ①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教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教育과 法律이 정하는 教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義務教育은 無償으로 한다. ④教育의 自主性·專門性 및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國家는 平生教育을 振興하여야 한다. ⑥學校教育 및 平生教育을 포함한 教育制度와 그 運營, 教育財政 및 教員의 地位에 관한 基本的인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31條 ①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教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教育과 法律이 정하는 教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義務教育은 無償으로 한다. ④教育의 自主性·專門性·政治的 中立性 및 大學의 自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國家는 平生教育을 振興하여야 한다. ⑥學校教育 및 平生教育을 포함한 教育制度와 그 운영, 教育財政 및 教員의 地位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30條 ①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經濟的 方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과 適正賃金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內容과 條件을 民主主義原則에 따라 法律로 정한다. ③勤勞條件의 基準은 人間의 尊嚴性을 보장하도록 法律로 정한다. ④女子와 少年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⑤國家有功者·傷痍軍警 및 戰歿軍警의 遺家族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優先的으로 勤勞의 機會를 賦與받는다.	第32條 ①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經濟的 방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과 適正賃金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賃金制를 施行하여야 한다. ②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내용과 조건을 民主主義原則에 따라 法律로 정한다. ③勤勞條件의 基準은 人間의 尊嚴性을 보장하도록 法律로 정한다. ④女子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雇傭·賃金 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年少者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國家有功者·傷痍軍警 및 戰歿軍警의 遺家族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優先的으로 勤勞의 機會를 부여받는다.
第31條 ①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다만, 團體行動權의 行使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로 인정된 者를 제외하고는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질 수 없다. ③國家·地方自治團體·國公營企業體·防衛産業體·公益事業體 또는 國民經濟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事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第33條 ①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②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이 정하는 者에 한하여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③法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

現 行 憲 法	改 正 案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니할 수 있다.
第32條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 ③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34條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노력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⑤身體障碍者 및 疾病·老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⑥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33條 모든 國民은 깨끗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와 國民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35條 ①모든 國民은 健康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와 國民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環境權의 內容과 行使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③國家는 住宅開發政策 등을 통하여 모든 國民이 快適한 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34條 ①婚姻과 家族生活은 個人의 尊嚴과 兩性의 平等을 기초로 成立되고 維持되어야 한다. ②모든 國民은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36條 ①婚姻과 家族生活은 개인의 尊嚴과 兩性의 平等을 기초로 成立되고 維持되어야 하며, 國家는 이를 보장한다. ②國家는 母性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國民은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35條 ①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列擧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供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限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內容을 侵害할 수 없다.	第37條 ①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第36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38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37條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②누구든지 兵役義務의 履行으로 不利益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39條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②누구든지 兵役義務의 이행으로 인하여 不利益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現 行 憲 法	改 正 案
第4章 國 會	**第3章 國 會**
第76條 立法權은 國會에 속한다.	第40條 立法權은 國會에 속한다.
第77條 ①國會는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된 議員으로 構成한다.	第41條 ①國會는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된 國會議員으로 구성한다.
②國會議員의 數는 法律로 정하되, 200人以上으로 한다.	②國會議員의 數는 法律로 정하되, 200人 이상으로 한다.
③國會議員의 選擧區와 比例代表制 기타 選擧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③國會議員의 選擧區와 比例代表制 기타 選擧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78條 國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第42條 國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第79條 國會議員은 法律이 정하는 職을 兼할 수 없다.	第43條 國會議員은 法律이 정하는 職을 겸할 수 없다.
第80條 ①國會議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期中 國會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第44條 ①國會議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期 중 國會의 同意 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②國會議員이 會期前에 逮捕 또는 拘禁된 때에는 現行犯人이 아닌 限 國會의 要求가 있으면 會期中 釋放된다.	②國會議員이 會期 전에 逮捕 또는 拘禁된 때에는 現行犯人이 아닌 한 國會의 요구가 있으면 會期 중 釋放된다.
第81條 國會議員은 國會에서 職務上 행한 發言과 表決에 관하여 國會外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45條 國會議員은 國會에서 職務上 행한 發言과 表決에 관하여 國會 외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82條 ①國會議員은 淸廉의 義務가 있다.	第46條 ①國會議員은 淸廉의 義務가 있다.
②國會議員은 國家利益을 優先하여 良心에 따라 職務를 행한다.	②國會議員은 國家利益을 우선하여 良心에 따라 職務를 행한다.
③國會議員은 그 地位를 濫用하여 國家·公共團體 또는 企業體와의 契約이나 그 處分에 의하여 財産上의 權利·利益 또는 職位를 取得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그 取得을 알선할 수 없다.	③國會議員은 그 地位를 濫用하여 國家·公共團體 또는 企業體와의 契約이나 그 處分에 의하여 財産上의 權利·利益 또는 職位를 취득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第83條 ①國會의 定期會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年 1回 集會되며, 國會의 臨時會는 大統領 또는 國會 在籍議員 3分의1 以上의 要求에 의하여 集會된다.	第47條 ①國會의 定期會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回 集會되며, 國會의 臨時會는 大統領 또는 國會 在籍議員 4分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集會된다.
②定期會의 會期는 90日을, 臨時會의 會期는 30日을 초과할 수 없다.	②定期會의 會期는 100日을, 臨時會의 會期는 30日을 초과할 수 없다.
③國會는 定期會·臨時會를 합하여 年150日을 초과하여 開會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이 集會를 要求한 臨時會의 日數는 이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③大統領이 臨時會의 集會를 요구할 때에는 期間과 集會要求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大統領이 臨時會의 集會를 要求할 때에는 期間과 集會要求의 이유를 明示하여야 한	

現 行 憲 法	改 正 案
다. ⑤大統領의 要求에 의하여 集會된 臨時會에서는 政府가 提出한 議案에 限하여 處理하며 國會는 大統領이 集會要求時에 정한 期間에 限하여 開會한다.	
第84條 國會는 議長 1人과 副議長 2人을 選擧한다.	第48條 國會는 議長 1人과 副議長 2人을 選出한다.
第85條 國會는 憲法 또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그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第49條 國會는 憲法 또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第86條 ①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거나 議長이 國家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公開하지 아니한 會議의 內容은 公表되어서는 아니된다.	第50條 ①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거나 議長이 國家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公開하지 아니한 會議內容의 公表에 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87條 國會에 提出된 法律案 기타의 議案은 會期中에 議決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國會議員의 任期가 滿了되거나 國會가 解散된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51條 國會에 제출된 法律案 기타의 議案은 會期 중에 議決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國會議員의 任期가 滿了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88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다.	第52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제출할 수 있다.
第89條 ①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에 移送되어 15日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②法律案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第1項의 期間內에 異議書를 붙여 國會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要求할 수 있다. 國會의 開會中에도 또한 같다. ③大統領은 法律案의 一部에 대하여 또는 法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要求할 수 없다. ④再議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再議에 붙이고,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⑤大統領이 第1項의 期間內에 公布나 再議의 要求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⑥大統領은 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確定된 法律을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5項에 의하여 法律이 確定된 後 또는 第4項에 의한 確定法律이 政府에 移送된 후 5	第53條 ①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에 移送되어 15日 이내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②法律案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第1項의 期間 내에 異議書를 붙여 國會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國會의 閉會 중에도 또한 같다. ③大統領은 法律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法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요구할 수 없다. ④再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再議에 붙이고,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확정된다. ⑤大統領이 第1項의 期間 내에 公布나 再議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확정된다. ⑥大統領은 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法律을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5項에 의하여 法律이 확정된 후 또는 第4項에 의한 確定法律이 政府에 移送된 후 5

現 行 憲 法	改 正 案
日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會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⑦法律은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公布한 날로부터 20日을 경과함으로써 效力을 발생한다.	日 이내에 大統領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會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⑦法律은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公布한 날로부터 20日을 경과함으로써 效力을 발생한다.
第90條 ①國會는 國家의 豫算案을 審議·確定한다. ② 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90日前까지 國會에 提出하고, 國會는 會計年度 開始 30日前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會計年度가 開始될 때까지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豫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經費는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執行할 수 있다. 1. 憲法이나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維持·運營 2. 法律上 支出義務의 履行 3. 이미 豫算으로 承認된 事業의 계속	第54條 ①國會는 國家의 豫算案을 審議·確定한다. ② 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90日 전까지 國會에 제출하고, 國會는 會計年度 開始 30日 전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會計年度가 開始될 때까지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豫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의 目的을 위한 經費는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執行할 수 있다. 1. 憲法이나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維持·運營 2. 法律上 支出義務의 履行 3. 이미 豫算으로 승인된 事業의 계속
第91條 ①한 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年限을 정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豫備費는 總額으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55條 ①한 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年限을 정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豫備費는 總額으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92條 政府는 豫算에 變更을 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하여 國會에 提出할 수 있다.	第56條 政府는 豫算에 變更을 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하여 國會에 제출할 수 있다.
第93條 國會는 政府의 同意없이 政府가 提出한 支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57條 國會는 政府의 同意 없이 政府가 제출한 支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94條 國債를 모집하거나 豫算外에 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을 締結하려 할 때에는 政府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58條 國債를 모집하거나 豫算 외에 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政府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95條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 정한다.	第59條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 정한다.
第96條 ①國會는 相互援助 또는 安全保障에 관한 條約, 중요한 國際組織에 관한 條約, 友好通商航海條約, 主權의 制約에 관한 條約, 講和條約, 國家나 國民에게 중대한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 또는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第60條 ①國會는 相互援助 또는 安全保障에 관한 條約, 중요한 國際組織에 관한 條約, 友好通商航海條約, 主權의 制約에 관한 條約, 講和條約, 國家나 國民에게 중대한 財政的 부담을 지우는 條約 또는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現 行 憲 法	改 正 案
②宣戰布告, 國軍의 外國에의 派遣 또는 外國軍隊의 大韓民國 領域안에서의 駐留에 대하여도 國會는 同意權을 가진다.	②國會는 宣戰布告, 國軍의 外國에의 派遣 또는 外國軍隊의 大韓民國 領域 안에서의 駐留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第97條 國會는 特定한 國政事案에 관하여 調査할 수 있으며, 그에 직접 관련된 書類의 提出, 證人의 출석과 證言이나 의견의 陳述을 要求할 수 있다. 다만, 裁判과 進行中인 犯罪搜査·訴追에 간섭할 수 없다.	第61條 ①國會는 國政을 監査하거나 특정한 國政事案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書類의 提出 또는 證人의 출석과 證言이나 의견의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②國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8條①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國會나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 國政處理 狀況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陳述하고 質問에 응답할 수 있다.	第62條①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國會나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 國政處理狀況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陳述하고 質問에 응답할 수 있다.
②國會나 그 委員會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出席要求를 받은 때에는 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國會나 그 委員會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出席要求를 받은 때에는 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第99條 ①國會는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에 대하여 個別的으로 그 解任을 議決할 수 있다. 다만, 國務總理에 대한 解任議決은 國會가 任命同意를 한 後 1年 以內에는 할 수 없다.	第63條 ①國會는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解任議決은 國會在籍委員 3分의1 以上의 發議에 의하여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②第1項의 解任建議는 國會 在籍議員 3分의 1 以上의 發議에 의하여 國會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第2項의 議決이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國務總理 또는 당해 國務委員을 解任하여야 한다. 다만, 國務總理에 대한 解任議決이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全員을 解任하여야 한다.	
第100條 ①國會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議事와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64條 ①國會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範圍 안에서 議事와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며, 議員을 懲戒할 수 있다.	②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며, 議員을 懲戒할 수 있다.
③議員을 除名하려면 國會在籍議員 3分의2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議員을 除名하려면 國會 在籍議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第2項과 第3項의 處分에 대하여는 法院에 提訴할 수 없다.	④第2項과 第3項의 處分에 대하여는 法院에 提訴할 수 있다.
第101條 ①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	第65條 ①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 各

現 行 憲 法	改 正 案
部의 長·憲法委員會委員·法官·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監査委員 기타 法律에 정한 公務員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議決할 수 있다.	部의 長·憲法裁判所 裁判官·法官·中央選擧管理委員會 委員·監査院長·監査委員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議決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 以上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議決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에 대한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發議와 國會在籍議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②第1項의 彈劾訴追는 國會 在籍議員 3分의 1 以上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議決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에 대한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發議와 國會 在籍議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彈核訴追의 議決을 받은 者는 彈劾決定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정지된다.	③彈劾訴追의 議決을 받은 者는 彈劾審判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정지된다.
④彈劾決定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지는 아니한다.	④彈劾決定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지는 아니한다.
第3章 政 府	第4章 政 府
第1節 大統領	第1節 大統領
第38條 ①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이며, 外國에 대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第66條 ①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이며, 外國에 대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②大統領은 國家의 獨立·領土의 保全·國家의 繼續性과 憲法을 守護할 責務를 진다.	②大統領은 國家의 獨立·領土의 保全·國家의 繼續性과 憲法을 守護할 責務를 진다.
③大統領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를 진다.	③大統領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를 진다.
④行政權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에 속한다.	④行政權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에 속한다.
第39條 ①大統領은 大統領選擧人團에서 無記名投票로 選擧한다.	第67條 ①大統領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한다.
②大統領에 立候補하려는 者는 政黨의 推薦을 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選擧에 있어서 最高得票者가 2人 이상인 때에는 國會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出席한 公開會議에서 多數票를 얻은 者를 當選者로 한다.
③大統領選擧人團에서 在籍大統領選擧人 過半數의 贊成을 얻은 者를 大統領當選者로 한다.	③大統領候補者가 1人일 때에는 그 得票數가 選擧權者 總數의 3分의 1 이상이 아니면 大統領으로 當選될 수 없다.
④第3項의 得票者가 없을 때에는 2次投票를 하고, 2次投票에도 第3項의 得票者가 없을 때에는 最高得票者가 1人이면 最高得票者와 次點者에 대하여, 最高得票者가 2人 以上이면 最高得票者에 대하여 決選投票를 함으로	④大統領으로 選擧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 被選擧權이 있고 選擧日 현재 40歲에 達하여야 한다.
	⑤大統領의 選擧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現 行 憲 法	改 正 案
써 多數得票者를 大統領當選者로 한다. ⑤大統領의 選擧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40條 ①大統領選擧人團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된 大統領選擧人으로 構成한다. ②大統領選擧人의 數는 法律로 정하되, 5,000人 以上으로 한다. ③大統領選擧人의 選擧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削 除) (削 除)
第41條 ①大統領選擧人으로 選出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고, 選擧日現在 30歲에 達하여야 한다. 다만, 國會議員과 公務員은 大統領選擧人이 될 수 없다. ②大統領選擧人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③大統領選擧人은 政黨에 소속할 수 있다. ④大統領選擧人은 選擧人이 된 後 처음 實施되는 國會議員의 選擧에 있어서 國會議員으로 選出될 수 없다. ⑤大統領選擧人은 당해 大統領의 任期開始日까지 그 身分을 가진다.	(削 除)
第42條 大統領으로 選擧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고, 選擧日 現在 계속하여 5年 以上 國內에 居住하고 40歲에 達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公務로 外國에 派遣된 期間은 國內 居住期間으로 본다.	(削 除)
第43條 ①大統領의 任期가 滿了되는 때에는 大統領選擧人團은 늦어도 任期滿了 30日前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②大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새로이 大統領選擧人團을 構成하여 3月以內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第68條 ①大統領의 任期가 滿了되는 때에는 任期滿了 70日 내지 40日 前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②大統領이 闕位된 때 또는 大統領 當選者가 死亡하거나 判決 기타의 事由로 그 資格을 喪失한 때에는 60日 以內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第44條 大統領은 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宣誓를 한다. "나는 憲法을 遵守하고 國家를 保衛하며 民族文化의 발전 및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에 노력하고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하여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 앞에 嚴肅히 宣誓합니다."	第69條 大統領은 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宣誓를 한다. "나는 憲法을 遵守하고 國家를 保衛하며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 및 民族文化의 창달에 노력하여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 앞에 엄숙히 宣誓합니다."
第45條 大統領의 任期는 7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第70條 大統領의 任期는 5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現 行 憲 法	改 正 案
第46條 大統領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 法律에 정한 國務委員의 順位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	第71條 大統領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 法律이 정한 國務委員의 順序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
第47條 大統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外交·國防·統一 기타 國家安危에 관한 重要政策을 國民投票에 부칠 수 있다.	第72條 大統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外交·國防·統一 기타 國家安危에 관한 重要政策을 國民投票에 부칠 수 있다.
第48條 大統領은 條約을 締結·批准하고, 外交使節을 信任·接受 또는 派遣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한다.	第73條 大統領은 條約을 締結·批准하고, 外交使節을 信任·接受 또는 派遣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한다.
第49條 ①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軍을 統帥한다. ②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 정한다.	第74條 ①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軍을 統帥한다. ②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 정한다.
第50條 大統領은 法律에서 具體的으로 範圍를 정하여 委任받은 事項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項에 관하여 大統領令을 發할 수 있다.	第75條 大統領은 法律에서 具體的으로 範圍를 정하여 委任받은 事項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項에 관하여 大統領令을 發할 수 있다.
第51條 ①大統領은 天災·地變 또는 중대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처하거나, 國家의 安全을 威脅하는 交戰狀態나 그에 準하는 중대한 非常事態에 處하여 國家를 保衛하기 위하여 급속한 措置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內政·外交·國防·經濟·財政·司法등 國政全般에 걸쳐 필요한 非常措置를 할 수 있다.	第76條 ①大統領은 內憂·外患·天災·地變 또는 중대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있어서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緊急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限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財政·經濟上의 處分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發할 수 있다.
②大統領은 第1項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憲法에 規定되어 있는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暫定的으로 정지할 수 있고,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②大統領은 國家의 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交戰狀態에 있어서 國家를 保衛하기 위하여 緊急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發할 수 있다.
③第1項과 第2項의 措置를 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 承認을 얻어야 하며, 承認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措置는 效力을 喪失한다.	③大統領은 第1項과 第2項의 處分 또는 命令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國會에 報告하여 그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④第1項과 第2項의 措置는 그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最短期間內에 限定하여야 하고, 그 原因이 消滅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承認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處分 또는 命令은 그때 부터 效力을 喪失한다. 이 경우 그 命令에 의하여 改正 또는 廢止되었던 法律은 그 命令이 承認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效力을 회복한다.
⑤國會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非常措置의 解除를 要求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⑤大統領은 第3項과 第4項의 事由를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現 行 憲 法	改 正 案
第52條 ①大統領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 非常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써 軍事上의 필요에 응하거나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第77條 ①大統領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 非常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써 軍事上의 필요에 응하거나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②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	②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
③非常戒嚴이 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令狀制度,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③非常戒嚴이 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令狀制度,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④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國會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戒嚴의 解除를 요구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⑤國會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戒嚴의 解除를 요구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第53條 ①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員을 任命한다.	第78條 ①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員을 任免한다.
第54條 ①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赦免·減刑 또는 復權을 命할 수 있다.	第79條 ①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赦免·減刑 또는 復權을 命할 수 있다.
②一般赦免을 命하려면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②一般赦免을 命하려면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赦免·減刑 및 復權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③赦免·減刑 및 復權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55條 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勳章 기타의 榮典을 수여한다.	第80條 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勳章 기타의 榮典을 수여한다.
第56條 大統領은 國會에 출석하여 發言하거나 書翰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第81條 大統領은 國會에 출석하여 發言하거나 書翰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第57條 ①大統領은 國家의 安定 또는 國民全體의 利益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國會議長의 諮問 및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친 後 그 事由를 明示하여 國會를 解散할 수 있다. 다만, 國會가 構成된 後 1年 以內에는 解散할 수 없다.	(削 除)
②大統領은 같은 事由로 2次에 걸쳐 國會를 解散할 수 없다.	
③國會가 解散된 경우 國會議員 總選擧는 解散된 날로부터 30日以後 60日以內에 實施한다.	
第58條 大統領의 國法上 行爲는 文書로써 하며, 이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관계 國務委員이 副署한다. 軍事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第82條 大統領의 國法上 행위는 文書로써 하며, 이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관계 國務委員이 副署한다. 軍事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第59條 大統領은 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	第83條 大統領은 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

現 行 憲 法	改 正 案
의 長 기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兼할 수 없다.	의 長 기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兼할 수 없다.
第60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犯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中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84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犯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中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61條 前職大統領의 身分과 禮遇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第85條 前職大統領의 身分과 禮遇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第 2 節 行政府	第 2 節 行政府
第 1 款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第 1 款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第62條 ①國務總理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고, 行政에 관하여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轄한다. ③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總理로 任命될 수 없다.	第86條 ①國務總理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며, 行政에 관하여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轄한다. ③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總理로 任命될 수 없다.
第63條 ①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委員은 國政에 관하여 大統領을 補佐하며, 國務會議의 構成員으로서 國政을 審議한다. ③國務總理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④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委員으로 任命될 수 없다.	第87條 ①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委員은 國政에 관하여 大統領을 補佐하며, 國務會議의 構成員으로서 國政을 審議한다. ③國務總理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④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委員으로 任命될 수 없다.
第 2 款 國務會議	第 2 款 國務會議
第64條 ①國務會議는 政府의 權限에 속하는 중요한 政策을 審議한다. ②國務會議는 大統領·國務總理와 15人 以上 30人以下의 國務委員으로 構成한다. ③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되고, 國務總理는 副議長이 된다.	第88條 ①國務會議는 政府의 權限에 속하는 중요한 政策을 審議한다. ②國務會議는 大統領·國務總理와 15人 以上 30人 以下의 國務委員으로 構成한다. ③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되고, 國務總理는 副議長이 된다.
第65條 다음 事項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國政의 基本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 2. 宣戰·講和 기타 중요한 對外政策 3. 憲法改正案·國民投票案·條約案·法律案 및 大統領令案	第89條 다음 事項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國政의 基本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 2. 宣戰·講和 기타 중요한 對外政策 3. 憲法改正案·國民投票案·條約案·法律案 및 大統領令案

現 行 憲 法	改 正 案
4. 豫算案·決算·國有財産處分의 基本計劃·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 기타 財政에 관한 重要事項	4. 豫算案·決算·國有財産處分의 基本計劃·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 기타 財政에 관한 重要事項
5. 大統領의 非常措置 또는 戒嚴과 그 解除	5. 大統領의 緊急命令·緊急財政經濟處分 및 命令 또는 戒嚴과 그 解除
6. 軍事에 관한 重要事項	6. 軍事에 관한 重要事項
7. 國會의 解散	7. 國會의 臨時會 集會의 要求
8. 國會의 臨時會集會의 要求	8. 榮典 授與
9. 榮典授與	9. 赦免·減刑과 復權
10. 赦免·減刑과 復權	10. 行政各部間의 權限의 劃定
11. 行政各部間의 權限의 劃定	11. 政府 안의 權限의 委任 또는 配定에 관한 基本計劃
12. 政府 안의 權限의 委任 또는 配定에 관한 基本計劃	12. 國政處理狀況의 評價·分析
13. 國政處理狀況의 評價·分析	13. 行政各部의 중요한 政策의 樹立과 調整
14. 行政各部의 중요한 政策의 樹立과 調整	14. 政黨解散의 提訴
15. 政黨解散의 提訴	15. 政府에 提出 또는 回附된 政府의 政策에 관계되는 請願의 審査
16. 政府에 提出 또는 回附된 政府의 政策에 관계되는 請願의 審査	16. 檢察總長·合同參謀議長·各軍參謀總長·國立大學校總長·大使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과 國營企業體 管理者의 任命
17. 合同參謀議長·各軍參謀總長·檢察總長·國立大學校總長·大使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과 國營企業體 管理者의 任命	17. 기타 大統領·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提出한 事項
18. 기타 大統領·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提出한 事項	
第66條 ①國政의 重要한 事項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元老로 構成되는 國政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第90條 ①國政의 重要한 事項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元老로 構成되는 國家元老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國政諮問會議의 議長은 直前大統領이 된다. 다만, 直前大統領이 없을 때에는 大統領이 指名한다.	②國家元老諮問會議의 議長은 直前大統領이 된다. 다만, 直前大統領이 없을 때에는 大統領이 指名한다.
③國政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③國家元老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67條 ①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樹立에 관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를 둔다.	第91條 ①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樹立에 관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를 둔다.
②國家安全保障會議는 大統領이 主宰한다.	②國家安全保障會議는 大統領이 主宰한다.
③國家安全保障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③國家安全保障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68條 ①平和統一政策의 수립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第92條 ①平和統一政策의 수립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②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現 行 憲 法	改 正 案
(新 設)	第93條 ①國民經濟의 發展을 위한 重要政策의 樹立에 관하여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民經濟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國民經濟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 3 款 行政各部	第 3 款 行政各部
第69條 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員 중에서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94條 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員 중에서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70條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部의 長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法律이나 大統領令의 委任 또는 職權으로 總理令 또는 部令을 發할 수 있다.	第95條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部의 長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法律이나 大統領令의 委任 또는 職權으로 總理令 또는 部令을 發할 수 있다.
第71條 行政各部의 設置·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 정한다.	第96條 行政各部의 設置·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 정한다.
第 4 款 監査院	第 4 款 監査院
第72條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 國家 및 法律에 정한 團體의 會計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監察을 하기 위하여 大統領 所屬下에 監査院을 둔다.	第97條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 國家 및 法律이 정한 團體의 會計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監察을 하기 위하여 大統領 所屬下에 監査院을 둔다.
第73條 ①監査院은 院長을 포함한 5人 以上 11人 以下의 監査委員으로 構成한다. ②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限하여 重任할 수 있다. ③院長이 闕位된 경우에 任命된 後任者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④監査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限하여 重任할 수 있다.	第98條 ①監査院은 院長을 포함한 5人 以上 11人 以下의 監査委員으로 構成한다. ②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限하여 重任할 수 있다. ③監査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限하여 重任할 수 있다.
第74條 監査院은 歲入·歲出의 決算을 每年 檢査하여 大統領과 次年度國會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99條 監査院은 歲入·歲出의 決算을 每年 檢査하여 大統領과 次年度國會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75條 監査院의 組織·職務範圍·監査委員의 資格·監査對象 公務員의 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100條 監査院의 組織·職務範圍·監査委員의 資格·監査對象 公務員의 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 5 章 法 院	第 5 章 法 院
第102條 ①司法權은 法官으로 構成된 法院에	第101條 ①司法權은 法官으로 構成된 法院에

現 行 憲 法	改 正 案
속한다.	속한다.
②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法院으로 組織된다.	②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法院으로 組織된다.
③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③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第103條 ①大法院에 部를 둘 수 있다.	第102條 ①大法院에 部를 둘 수 있다.
②大法院에 行政·租稅·勞動·軍事등을 專擔하는 部를 둘 수 있다.	②大法院에 大法官을 둔다. 다만,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大法官이 아닌 法官을 둘 수 있다.
③大法院에 大法院判事를 둔다. 다만,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을 둘 수 있다.	③大法院과 各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 정한다.
④大法院과 各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 정한다.	
第104條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	第103條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
第105條 ①大法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104條 ①大法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大法院判事는 大法院長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大法官은 大法院長의 提請으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大法院長과 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은 大法院長이 任命한다.	③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은 大法官會議의 同意를 얻어 大法院長이 任命한다.
第106條 ①大法院長의 任期는 5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第105條 ①大法院長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②大法院判事의 任期는 5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②大法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③大法院長과 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③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④法官의 停年은 法律로 정한다	④法官의 停年은 法律로 정한다.
第107條 ①法官은 彈劾 또는 刑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하며, 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停職·減俸 또는 不利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第106條 ①法官은 彈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하며, 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停職·減俸 기타 不利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②法官이 중대한 心身上의 障害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하게 할 수 있다.	②法官이 중대한 心身上의 障害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하게 할 수 있다.
第108條 ①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法院은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憲法委員會에 提請하여 그 決定에 의하여 裁判한다.	第107條 ①法律이 憲法에 위반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法院은 憲法裁判所에 提請하여 그 審判에 의하여 裁判한다.
②命令·規則·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大	②命令·規則 또는 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

現 行 憲 法	改 正 案
法院은 이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을 가진다.	는 大法院은 이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을 가진다.
③裁判의 前審節次로서 行政審判을 할 수 있다. 行政審判의 節次는 法律로 정하되, 司法節次가 準用되어야 한다.	③裁判의 前審節次로서 行政審判을 할 수 있다. 行政審判의 節次는 法律로 정하되, 司法節次가 準用되어야 한다.
第109條 大法院은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訴訟에 관한 節次,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108條 大法院은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訴訟에 관한 節次,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110條 裁判의 審理와 判決은 公開한다. 다만, 審理는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安寧秩序를 방해하거나 善良한 風俗을 害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109條 裁判의 審理와 判決은 公開한다. 다만, 審理는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安寧秩序를 방해하거나 善良한 風俗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111條 ①軍事裁判을 管轄하기 위하여 特別法院으로서 軍法會議를 둘 수 있다.	第110條 ①軍事裁判을 管轄하기 위하여 特別法院으로서 軍事法院을 둘 수 있다.
②軍法會議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管轄한다.	②軍事法院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管轄한다.
③軍法會議의 組織·權限 및 裁判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③軍事法院의 組織·權限 및 裁判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④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은 軍人·軍務員의 犯罪나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 哨兵·哨所·有害飮食物供給·捕虜에 관한 罪중 法律에 정한 경우에 限하여 單審으로 할 수 있다.	④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은 軍人·軍務員의 犯罪나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 哨兵·哨所·有毒飮食物供給·捕虜에 관한 罪 중 法律이 정한 경우에 限하여 單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死刑을 宣告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6 章 憲法委員會	第 6 章 憲法裁判所
第112條 ①憲法委員會는 다음 事項을 審判한다.	第111條 ①憲法裁判所는 다음 사항을 管掌한다.
1.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	1.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 審判
2. 彈劾	2. 彈劾의 審判
3. 政黨의 解散	3. 政黨의 解散 審判
	4. 國家機關相互間,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및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權限爭議에 관한 審判
	5. 法律이 정하는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
②憲法委員會는 9人의 委員으로 構成하며, 委員은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憲法裁判所는 法官의 資格을 가진 9人의 裁判官으로 構成하며, 裁判官은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第2項의 委員중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③第2項의 裁判官중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

現 行 憲 法	改 正 案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한다. ④憲法委員會의 委員長은 委員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한다. ④憲法裁判所의 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裁判官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113條 ①憲法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②憲法委員會 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③憲法委員會 委員은 彈劾 또는 刑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④憲法委員會 委員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第112條 ①憲法裁判所 裁判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②憲法裁判所 裁判官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③憲法裁判所 裁判官은 彈劾 또는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第114條 ①憲法委員會에서 法律의 違憲決定, 彈劾의 決定 또는 政黨解散의 決定을 할때에는 委員 6人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②憲法委員會의 組織과 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113條 ①憲法裁判所에서 法律의 違憲決定, 彈劾의 決定, 政黨解散의 決定 또는 憲法訴願에 관한 認容決定을 할 때에는 裁判官 6人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②憲法裁判所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審判에 관한 節次,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③憲法裁判所의 組織과 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 7 章 選擧管理	第 7 章 選擧管理
第115條 ①選擧와 國民投票의 公正한 管理 및 政黨에 관한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選擧管理委員會를 둔다. ②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3人, 國會에서 選出하는 3人과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3人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委員長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③委員의 任期는 5年으로 한다. ④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⑤委員은 彈劾 또는 形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⑥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法令의 範圍안에서 選擧管理·國民投票管理 또는 政黨事務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114條 ①選擧와 國民投票의 公正한 管理 및 政黨에 관한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選擧管理委員會를 둔다. ②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3人, 國會에서 選出하는 3人과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3人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委員長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③委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④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⑤委員은 彈劾 또는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⑥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法令의 範圍안에서 選擧管理·國民投票管理 또는 政黨事務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으며,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現 行 憲 法	改 正 案
⑦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⑦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116條 ①各級 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人名簿의 作成등 選擧事務에 관하여 관계 行政機關에 必要한 指示를 할 수 있다.	第115條 ①各級 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人名簿의 作成 등 選擧事務와 國民投票 事務에 關하여 關係 行政機關에 必要한 指示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指示를 받은 당해 行政機關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指示를 받은 당해 行政機關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17條 ①選擧運動은 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管理下에 法律이 정하는 範圍안에서 하되, 均等한 機會가 보장되어야 한다.	第116條 ①選擧運動은 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管理下에 法律이 정하는 範圍안에서 하되, 均等한 機會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選擧에 관한 經費는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政黨 또는 後補者에게 負擔시킬 수 없다.	②選擧에 관한 經費는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政黨 또는 後補者에게 負擔시킬 수 없다.
第 8 章 地方自治	第 8 章 地方自治
第118條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利에 관한 事務를 處理하고 財産을 管理하며, 法令의 範圍안에서 自治에 관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	第117條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利에 관한 事務를 處理하고 財産을 管理하며, 法令의 範圍안에서 自治에 관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種類는 法律로 정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種類는 法律로 정한다.
第119條 ①地方自治團體에 議會를 둔다.	第118條 ①地方自治團體에 議會를 둔다.
②地方議會의 組織·權限·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方法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運營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②地方議會의 組織·權限·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方法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運營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 9 章 經 濟	第 9 章 經 濟
第120條 ①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個人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함을 基本으로 한다.	第119條 ①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個人과 企業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尊重함을 基本으로 한다.
②國家는 모든 國民에게 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충족시키는 社會正義의 실현과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範圍안에서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한다.	②國家는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成長 및 安定과 적정한 所得의 分配를 유지하고 市場의 支配와 經濟力의 濫用을 방지하며 經濟主體間의 調和를 통한 經濟의 民主化를 위하여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다.
③獨寡占의 폐단은 적절히 規制·調整한다.	
第121條 ①鑛物 기타 중요한 地下資源·水産資源·水力과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期間 그 採取·開發 또는 利用을 特許할 수 있다.	第120條 ①鑛物 기타 중요한 地下資源·水産資源·水力과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期間 그 採取·開發 또는 利用을 特許할 수 있다.

現 行 憲 法	改 正 案
②國土와 資源은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그 균형있는 開發과 利用을 위하여 필요한 計劃을 樹立한다.	②國土와 資源은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그 균형 있는 開發과 利用을 위하여 필요한 計劃을 수립한다.
第122條 農地의 小作制度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다만, 農業生産性의 提高와 農地의 合理的인 利用을 위한 賃貸借 및 委託經營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第121條 ①國家는 農地에 관하여 耕者有田의 原則이 達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農地의 小作制度는 禁止된다. ②農業生産性의 提高와 農地의 合理的인 利用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事情으로 發生하는 農地의 賃貸借와 委託經營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第123條 國家는 農地와 山地 기타 國土의 效率的이고 균형있는 利用·開發과 保全을 위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義務를 課할 수 있다.	第122條 國家는 國民 모두의 生産 및 生活의 基盤이 되는 國土의 效率的이고 均衡있는 利用·開發과 保全을 위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義務를 課할 수 있다.
第124條 ①國家는 農民·漁民의 自助를 基盤으로 하는 農漁村開發을 위하여 필요한 計劃을 樹立하며, 地域社會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한다. ②國家는 中小企業의 事業活動은 保護·育成하여야 한다. ③國家는 農民·漁民과 中小企業의 自助組織을 育成하여야 하며, 그 政策的 中立性을 보장한다.	第123條 ①國家는 農業 및 漁業을 保護·育成하기 위하여 農·漁村綜合開發과 그 支援등 필요한 計劃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地域間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地域經濟를 育成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中小企業을 保護·育成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農水産物의 需給均衡과 流通構造의 改善에 努力하여 價格安定을 도모함으로써 農·漁民의 利益을 保護한다. ⑤國家는 農·漁民과 中小企業의 自助組織을 育成하여야 하며, 그 自律的 活動과 發展을 保障한다.
第125條 國家는 건전한 消費行爲를 啓導하고 生産品의 品質向上을 促求하기 위한 消費者保護運動을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第124條 國家는 건전한 消費行爲를 啓導하고 生産品의 品質向上을 促求하기 위한 消費者保護運動을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第126條 國家는 對外貿易을 育成하며, 이를 規制·調整할 수 있다.	第125條 國家는 對外貿易을 育成하며, 이를 規制·調整할 수 있다.
第127條 國防上 또는 國民經濟上 緊切한 필요로 인하여 法律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經營을 統制 또는 管理할 수 없다.	第126條 國防上 또는 國民經濟上 緊切한 필요로 인하여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경영을 統制 또는 관리할 수 없다.
第128條 ①國家는 國民經濟의 발전에 노력하고 科學技術을 暢達·振興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國家標準制度를 確立한다.	第127條 ①國家는 科學技術의 革新과 情報 및 人力의 開發을 통하여 國民經濟의 發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國家標準制度를 확립한다.

現 行 憲 法	改 正 案
③大統領은 第1項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諮問機構를 둘 수 있다.	③大統領은 第1項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諮問機構를 둘 수 있다.
第 10 章 憲法改正	第 10 章 憲法改正
第129條 ①憲法改正은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發議로 提案된다. ②大統領의 任期延長 또는 重任變更을 위한 憲法改正은 그 憲法改正提案 당시의 大統領에 대하여는 效力이 없다. 第130條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大統領이 20日 以上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131條 ①國會는 憲法改正案이 公告된 날로부터 60日 以內에 議決하여야 하며, 國會의 議決은 在籍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②憲法改正案은 國會가 議決한 後 30日以內에 國民投票에 붙여 國會議員選擧權者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③憲法改正案이 第2項의 贊成을 얻은 때에는 憲法改正은 確定되며, 大統領은 즉시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第128條 ①憲法改正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 또는 大統領의 發議로 提案된다. ②大統領의 任期延長 또는 重任變更을 위한 憲法改正은 그 憲法改正 提案 당시의 大統領에 대하여는 效力이 없다. 第129條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大統領이 20日 以上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130條 ①國會는 憲法改正案이 公告된 날로부터 60日 이내에 議決하여야 하며, 國會의 議決은 在籍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②憲法改正案은 國會가 議決한 후 30日 이내에 國民投票에 붙여 國會議員選擧權者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③憲法改正案이 第2項의 贊成을 얻은 때에는 憲法改正은 확정되며, 大統領은 즉시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附 則	附 則
第1條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이 憲法에 의한 最初의 大統領과 國會議員의 選擧는 1981年6月30日까지 實施한다. 第3條 이 憲法施行 당시의 大統領의 任期는 이 憲法에 의한 最初의 大統領이 選出됨과 동시에 終了된다. 第4條 이 憲法施行과 동시에 이 憲法施行 당시의 統一主體國民會議는 廢止되고 그 代議員의 任期도 終了된다. 第5條 ①이 憲法施行 당시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과 동시에 終了된다. ②이 憲法에 의하여 選擧된 最初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國會의 最初의 集會日로부터 開始된다.	第1條 이 憲法은 1988年2月25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憲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律의 制定·改正과 이 憲法에 의한 大統領 및 國會議員의 選擧 기타 이 憲法施行에 관한 準備는 이 憲法施行 전에 할 수 있다. 第2條 ①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選擧는 이 憲法施行日 40日 전까지 實施한다. ②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開始한다. 第3條 ①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國會議員選擧는 이 憲法公布日로부터 6月 이내에 실시하며, 이 憲法에 의하여 選出된 최초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國會議員選擧후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로부터 開始한다.

現 行 憲 法	改 正 案
第6條 ①國家保衛立法會議는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最初의 集會日 前日까지 存續하며,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最初의 集會日 前日까지 國會의 權限을 代行한다. ②國家保衛立法會議는 各界의 代表者로 構成하되, 그 組織과 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③國家保衛立法會議가 制定한 法律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裁判 및 豫算 기타 處分등은 그 效力을 持續하며 이 憲法 기타의 이유로 提訴하거나 異議를 할 수 없다. ④國家保衛立法會議는 政治風土의 刷新과 道義政治의 具現을 위하여 이 憲法施行日 以前의 政治的 또는 社會的 腐敗나 混亂에 현저한 責任이 있는 者에 대한 政治活動을 規制하는 法律을 制定할 수 있다.	②이 憲法公布 당시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第1項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 前日까지로 한다.
第7條 새로운 政治秩序의 確立을 위하여 이 憲法施行과 동시에 이 憲法施行 당시의 政黨은 당연히 解散된다. 다만, 늦어도 이 憲法에 의한 最初의 大統領選擧日 3月 以前까지는 새로운 政黨의 設立이 보장된다.	第4條 ①이 憲法施行 당시의 公務員과 政府가 任命한 企業體의 任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憲法에 의하여 選任方法이나 任命權者가 변경된 公務員과 大法院長 및 監査院長은 이 憲法에 의하여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하며, 이 경우 前任者인 公務員의 任期는 後任者가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한다. ②이 憲法施行 당시의 大法院長과 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第8條 ①이 憲法에 의하여 選擧方法이나 任命權者가 變更된 公務員과 大法院長·大法院判事·監査院長·監査委員·憲法委員會 委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後任者가 선거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하며, 이 경우 前任者인 公務員의 任期는 後任者가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한다. ②이 憲法중 公務員의 任期 또는 重任制限에 관한 規定은 이 憲法에 의하여 그 公務員이 最初로 選出 또는 任命된 때로부터 適用한다.	③이 憲法 중 公務員의 任期 또는 重任制限에 관한 規定은 이 憲法에 의하여 그 公務員이 최초로 選出 또는 任命된 때로부터 適用한다.
第9條 이 憲法施行 당시의 法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한 그 效力을 持續한다.	第5條 이 憲法施行 당시의 法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한 그 效力을 지속한다.
第10條 이 憲法에 의한 地方議會는 地方自治團體의 財政自立度를 감안하여 順次的으로 構成하되, 그 構成時期는 法律로 정한다.	第6條 이 憲法施行 당시에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 設置될 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職務를 행하고 있는 機關은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운 機關이 設置될 때까지 存續하며 그 職務를 행한다.

2. **憲法改正에관한請願**(沈完求議員紹介)
3. **憲法改正에관한請願**(任斗彬議員紹介)
4. **憲法改正에관한請願**(金在光議員紹介)
5. **憲法前文改正에관한請願**(李龍澤 辛達洙 鄭始鳳議員紹介)

(16時48分)

○委員長 蔡汶植 議事日程 第2項 沈完求議員의 紹介로 提出된 憲法改正에관한請願 議事日程 第3項 任斗彬議員의 紹介로 提出된 憲法改正에관한請願 議事日程 第4項 金在光議員의 紹介로 提出된 憲法改正에관한請願 議事日程 第5項 李龍澤議員 辛達洙議員 鄭始鳳議員의 紹介로 提出된 憲法前文改正에관한請願 이상 네件을 일괄해서 上程합니다.

이 네件의 請願은 조금전 憲法改正案起草小委員長의 報告에서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請願內容中 일부가 각각 반영되었으므로 國會請願審査規則 第12條 第1號에 따라서 각각 本會議에 附議하지 않기로 하는데 異議없으십니까?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産苦도 적지 않게 겪었읍니다. 또 적지 않은 진통도 겪었읍니다마는 오늘 이제 우리 院內各 交涉團體가 合意해서 憲法改正案을 마련하게 되었읍니다.

이 改正案은 또 모든 國民 그 合意의 바탕위에서 우리가 마련되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우리가 큰 일을 또 어려운 일을 성취했읍니다. 이 憲法改正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우리 同僚委員 여러분 또 특히 起草小委員會 여러분 많이 수고해 주셨읍니다.

그리고 또 專門委員 여러분들과 職員 여러분들도 이러한 일을 하는데 크게 수고를 해주셨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散會하고자 합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51分 散會)

○出席委員

蔡汶植	玄敬大	郭正出
金榮龜	金正男	金鍾仁
金重緯	南在斗	柳尙昊
朴敬錫	禹炳奎	李致浩
任斗彬	鄭昌和	曺淇相
許淸一	許京萬	金琫鎬
金守漢	金完泰	金正秀
辛基夏	李震淵	趙炳鳳
趙舜衡	趙鍾益	趙洪來
崔洛道	申敬說	金玉仙
林鍾基	韓錫奉	申喆均
崔容安	金鎔采	李大燁

○委員아닌出席議員

李大淳	鄭在原	鄭宗澤
金鉉圭	柳睦相	柳甲鐘

○國會事務處參席者

事務總長 李在奐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專門委員	李起昆
立法審議官	黃相元
立法審議官	尹壽男
立法審議官	趙在錫
立法審議官	高明允

【報告事項】

憲法改正案試案

(9月1日 民主正義黨·統一民主黨·新韓民主黨·한국국민당으로부터 各各 提出)

(第7次會議錄 附錄에 실음)